



■ 연구보고서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 고제이 · 이지혜 · 윤자영

【책임연구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OECD Family database on Korea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고재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발행일 2013년
저자 신윤정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가격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66-6 93330

발간사 <<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초저출산 현상과 그로 인한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범 정부적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은 저출산 영역, 고령사회 영역과 성장 동력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출산 영역의 정책들 중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실제로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13년부터는 무상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차상위 계층을 시작으로 도입된 이후 2013년에는 소득계층과 관계 없이 모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양육수당 외에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과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일가정 양립의 측면에서는 육아 휴직급여를 20만원부터 시작해 증가시켜 왔으며, 2011년부터는 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정책이 어떤 방향

으로 가고 있고, 의도한 대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의 세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고제이 부연구위원과 이지혜 전문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자영 연구위원의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 추진 과정에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장혜경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실장을 비롯하여 많은 자문을 해 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진심어린 검독과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기초보장연구센터장과 이현주 연구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개념	17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20
제3절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25
제3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국제 평가 지표	59
제1절 프랑스 가족 정책 평가 지표	61
제2절 OECD Family Database 지표	75
제4장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83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방법론	85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결과	102
제5장 결 론	125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27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132

참고문헌 137

부 록 141

부록 1. 조세 감면액 추계 방법론 141

부록 2. 육아 휴직 급여 추계 방법론 149

표 목차

〈표 2- 1〉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13. 07. 현재)	26
〈표 2- 2〉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 전환 계획	27
〈표 2- 3〉 국내 가족 관련 현금 지원 현황 (2013년)	28
〈표 2- 4〉 가정양육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29
〈표 2- 5〉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 (1999~2013)	31
〈표 2- 6〉 소득 계층별 만0~4세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 추이 (1999~2013)	31
〈표 2- 7〉 소득 계층별 만5세 보육료 지원 추이 (2000~2013)	32
〈표 2- 8〉 보육료 지원 단가 추이 (1999~2013)	33
〈표 2- 9〉 보육사업 총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 예산 추이 (2000~2012)	34
〈표 2-10〉 영유아 월평균 보육교육 지출 비용 추이 (2004, 2009, 2012)	41
〈표 2-11〉 육아휴직제도 변화 과정 및 주요 내용	43
〈표 2-12〉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3)	45
〈표 2-1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3)	46
〈표 2-14〉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2012)	47
〈표 2-15〉 출산전후 휴가급여 외 모성 수당 및 모성 보조금	48
〈표 2-16〉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	49
〈표 2-17〉 산전후 휴가 수혜자 중 육아휴직 수혜자의 비율 (2010)	52
〈표 2-18〉 지난 3년간 통상임금수준별 육아휴직급여 활용추세	53
〈표 2-19〉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비율	56
〈표 3- 1〉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 평가를 위한 거시 지표 (2013)	62
〈표 3- 2〉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 평가를 위한 미시 지표 (2013)	64
〈표 3- 3〉 조세부과 및 사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의 소득 수준 차이	67
〈표 3- 4〉 조세부과 및 사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 소득 수준의 계층 간 격차	68
〈표 3- 5〉 조세 감면 및 수당 지원 이후 생활 수준의 소득 수준별 격차	69
〈표 3- 6〉 자녀 보육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2007)	70
〈표 3- 7〉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 수준별 (2007)	72

〈표 3- 8〉 가족 유형별 평균 보육비 지출액	72
〈표 3- 9〉 보육 정책 변화 이후 보육비 지출액 (2002~2007)	74
〈표 3-10〉 OECD 주요 국가의 육아 휴직 특성 (2011/2012): Table PF2.1A	76
〈표 4- 1〉 본 연구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지표	86
〈표 4- 2〉 본 연구에 포함한 수당 지원 정책	91
〈표 4- 3〉 본 분석에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샘플 가구 수	96
〈표 4- 4〉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료 지원액과 현금 지원액 현황	97
〈표 4- 5〉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및 전체 복지 패널 샘플의 가구의 동등화 소득 현황	99
〈표 4- 6〉 소득 및 자녀수별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자 현황	99
〈표 4- 7〉 소득 및 자녀 수별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액 현황	100
〈표 4- 8〉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소득 수준별 (2007~2011)	105
〈표 4- 9〉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107
〈표 4-10〉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108
〈표 4-11〉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110
〈표 4-12〉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 (2007~2011)	113
〈표 4-13〉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115
〈표 4-14〉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수준별 (2007~2011)	118
〈표 4-15〉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녀 수별 (2007~2011)	120
〈표 4-16〉 지표 8: 육아 휴직 관련 기본 지표	121

그림 목차

[그림 2- 1]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22
[그림 2- 2] 자녀장려금 소득구간별·자녀수별 지급계획	27
[그림 2- 3]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35
[그림 2- 4] OECD 국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35
[그림 2- 5] 2013년도 보육 분야 항목별 예산 현황	36
[그림 2- 6] 국내 0~2세 및 3세 이상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2004~2012)	37
[그림 2- 7] OECD 국가의 0~2세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2010)	38
[그림 2- 8] OECD 국가의 3세 이상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2008)	38
[그림 2- 9]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시설 유형별 증가 추이 (1990~2012)	39
[그림 2-10]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공공·민간 유형별 증가 추이 (1990~2012)	40
[그림 2-11] 직종별 육아휴직 급여 수혜자의 추이 (여성 2004~2010)	51
[그림 2-12]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혜자수의 추이 (2004~2010)	52
[그림 2-13]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피보험자 비중	55
[그림 3- 1] OECD 주요 국가의 육아 휴직급여 특징 (2011/2012): Chart PF2.1A ...	78
[그림 3- 2]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2008)	79
[그림 3- 3]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80
[그림 3- 4]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80
[그림 3- 5]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81
[그림 4- 1]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전체 (2007~2011)	103
[그림 4- 2]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소득 수준별 (2007~2011)	104
[그림 4- 3]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106

[그림 4- 4]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108
[그림 4- 5]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110
[그림 4- 6]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전체 (2007~2011)	111
[그림 4- 7]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 소득수준별 (2007~2011)	112
[그림 4- 8]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114
[그림 4- 9]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2007~2011) ·	116
[그림 4-10]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117
[그림 4-11] 총 보육교육비 지출 비중과 가구 실제 지출 비중 간의 차이 : 소득수준별 (2007~2011)	117
[그림 4-12]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녀수별 (2007~2011)	119
[그림 4-13] 총 보육교육비 지출 비중과 가구 실제 지출 비중 간의 차이 : 자녀수별 (2007~2011)	120
[그림 4-14]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소득수준별	122
[그림 4-15]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123

Abstract <<

Evalu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n Child Care Suppor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hildcare support policies on relieving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with childcare responsibilities. We use the data from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to analyze the effects childcare policies on households of different levels of income and different number of children. In this study, the childcare support policies are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cash benefits including allowances and tax benefits; supports for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system. We revise and use the indices from French family policy evaluation and the OECD Family database.

The results present that cash benefits childcare household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the government expanded tax benefits for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the amount of childcare households' tax refund has not increased by much, with middle-income households receiving the least. Households with one child aged under 6 received more cash benefits per child tha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Household expenditure on childcare services decreased little even as families received more benefits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for childcare services from the government than they had before.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and the change of benefits from fixed amounts to fixed rates in real term has increased the income replacement level of parental leave benefits. Under the fixed amount system,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was more beneficial to low income households. However, the change to fixed rates system had a favorable effect on households with an income above the average and dual- income families.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cash benefits or benefits for childcare services will be needed on a continued basis for low-income households to help them invest more in their children. For middle- or upper-income households, we suggest that they will need policies that fit their specific needs. And all childcare support policies should take into account households with two or more children to have more benefits. To improve the parental leave system, it should be changed to raise its accessibility so that more fathers and more women working on a non-regular basis can benefit from it.

요약 <<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감면 정도를 계층 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 집단과 자녀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였다. 평가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를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현금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의 영역별로 마련된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한국 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현금 지원 액수 그리고 이러한 현금 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 정도를 파악하였다.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수당 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 등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도 포함시켰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 각 가구가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이러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최근 일련의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에 따라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에 따라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였다.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면 정

4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도를 비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 감면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제로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로 인해 가구가 받는 세제상의 혜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1명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더 높지 않았다. 정부가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실제로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총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가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은 감소되었지만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거에 보이던 소득 집단 간 보육교육비 격차는 상당 수준 해소되었으나 이러한 격차 감소는 정부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가구의 순 지출 증가에도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휴직급여의 정액제 인상 및 정률제 변화로 인해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하여 휴직 급여로 인한 소득 보전에 진전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정액제 하에서의 급여의 증가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 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있는 최근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들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현금 혹은 서비스를 통한 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교육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 결과 정책 지원액을 올리거나 정률제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소득 계층이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더 높아 육아휴직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저소득 계층의 육아휴직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육아 휴직 제도가 실제적으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 확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저출산, 가족정책, 영유아 자녀 양육, 0~5세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양육수당, 육아휴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2005년 이후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고 3~5세에게 누리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전체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영유아에게는 가정 양육 수당을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녀를 출산한 취업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도 결혼 및 출산 연령대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M-curve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로 자녀 양육비 혹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이러한 사실은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지금까지 확대되어 오고 있는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1)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20~44세)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은 주된 이유로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20.4%)" 와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25.6%)"를 지적하였다(김승권 외, 2012).

제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 내용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비해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취업 여성 혹은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해 부담 수준이 높은 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 액수도 보편성 추구라는 지향 하에 소득 수준이나 자녀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 전체 자녀 양육 가정에게 지원되고 있다. 육아 휴직 급여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은 고용 보험에 가입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생계부양자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통상 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가지고서는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현금·서비스·시간 지원 사이에서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적정한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가족에 대한 공적인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조세 감면 지원 사이에서 고르게 분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현금·서비스·시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OECD, 2011).

한걸음 더 나아가서 선진 유럽 국가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목적 이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전체 사회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선진 유럽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자녀 양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라는 지향성 하에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통합성을 추구하려는 사회 정책적인 성격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자녀에 대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보육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도 이것으로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교육 투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욕구에 편승하여 영유아 보육교육 시장이 부모들에게 더 많은 지출을 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얼마나 감면시켜 주었는가를 현금 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 지원 세 분야에 걸쳐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 감면 정도를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계층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현재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이라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 목적에 부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발달 과정과 현황 그리고 관련된 쟁점 사항을 논의하였다.

제3장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 평가 지표로서 프랑스 가족 정책의 평가 지표와 OECD Family database의 지표 내용을 검토하였다. 프랑스 사회보장청과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매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들 중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평가하기에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평가 지표로 활용하였다.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비교 가능한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장은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현금 지원, 보육교육서비스 지원, 모성 휴가 지원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별로 마련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어 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에 따라 가구가 지원받은 급여와 서비스 지원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원 받은 현금 지원 액수 그리고 이러한 현금 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 정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에 정부로부터 받는 현금 수당 뿐만 아니라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 등 자녀 양육에 따른 조세 절감액도 포함시켰다. 현금 수당만을 현금 급여로 간주해 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자녀로 인해 받게 되는 조세 절감액도 현금 급여로 간주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차별성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영유아 자녀 보육교육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액수, 각 가구가 영유아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실제적으로 지출한 금액, 그리고 이러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소요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개인 돌봄 서비스 비용, 학습지와 같은 사교육 비용 등 0~5세 영유아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가구가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액 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해 특별 공제로서 환급받는 조세 절감액까지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가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실제로 가구가 영유아 보육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과 각 가구가 가지고 있는 부담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파악하였다.

시간 지원 정책에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 하에서 급여액이 증가하고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는 등 최근 일련의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에 따라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파악하였다.

14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부의 영유아 양육 지원 확대에 따라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이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중 어느 계층에게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금 지원과 보육교육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0~5세 영유아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 감면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실제로 다자녀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평가하였다.

제5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개념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제3절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2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 이론적 배경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개념2)

자녀 양육은 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주로 가족이 담당하는 역할이었으며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구휼사업의 목적으로 양육을 지원해 왔다. 자녀 양육에 대한 “탈가족화(de-familialisa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각 국가가 고령화에 수반한 인구 구조 위기에 직면하고 여성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자녀 돌봄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부터이다. 즉,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신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 간에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와서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국가·사회·가족 간의 역할 분담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각 국가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역사적 및 사회적 배경은 유사하지만 국가마다 역할 분담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지 레짐, 모성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시장(market)의 역할과 기능, 시민 사회 발달 정도가 국가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대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철학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볼 때 각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가정의 표출이

2) 본 절의 주요 내용은 신윤정·김윤희(2012)에서 발췌하여 요약 정리하였다.

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제 국가와 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아동 양육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가족 역할의 대체가 아닌 가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각 국가들은 아동 및 아동 양육에 대해 전체 사회가 공유하고 합의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따라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목적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레짐은 크게 북구유럽국가형, 앵글로색슨국가형, 대륙유럽국가형, 남부 유럽국가형으로 구분된다. 각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레짐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레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구 유럽 국가들은 양성 평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자녀 양육에 대해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에서 25~49세 여성의 고용률은 대부분 80%가 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녀 출산 이후 약 1년의 육아 휴직 기간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이후에 직장에 복귀하면서 자녀를 국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둘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앵글로 색슨 국가들은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혹은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과 같이 취약 계층 영유아에 보다 집중적으로 양육 지원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가정은 자녀를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보육 시설에 맡기는데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가격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대륙유럽국가에 해당하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은 0~2세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에 의한 직접 양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3세 이상 유아에 대

해서는 국가에 의한 아동의 사회화를 강조하여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북구 유럽 국가와 달리 이들 국가에서 0~2세 영아 보육 서비스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넷째, 가족 간의 유대감이 강한 남부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에 의한 보육 지원과 시장 보육 서비스 모두 미약하며 자녀 양육을 주로 친인척에서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이러한 국가 유형에 해당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 영유아 양육 지원은 유럽의 인구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 동력 강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아동을 건강하게 키움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미래 세대를 양성할 수 있고, 보편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 통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OECD, 2006).

첫째, 아동의 생애 초기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평생 학습에서 필요한 중요한 기초를 이루게 하여 개인이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인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노동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저출산 현상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인 지원은 모든 아동들이 동등한 출발선상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사회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일탈 행동, 범죄, 빈곤 등 사후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

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자녀를 가진 여성이 직장 생활 하는데 직면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여성 노동력 활용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특히 유럽 국가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사항이다.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³⁾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크게 현금 지원 정책(in-cash), 현물 지원 정책(in-kind), 휴가 정책(in-time)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OECD, 2011). 현금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에 지출되는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감면해 주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로 월 단위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가족 수당 혹은 아동 수당이 해당된다. 현물 정책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국가의 지원을 받아 낮은 비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휴가 정책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휴가 혹은 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산전 후 휴가 혹은 육아 휴직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감면하는 기능을 가진 정책이라고 볼 때 명백하게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표방

3) 본 절의 주요 내용은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도 유아 조기 교육 정책, 부양 자녀에 대한 조세 감면 정책, 연금 수령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 등도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세 가지 유형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둔 단일한 정책이 아니라 세 가지 영역에 걸쳐 다양하고 조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영역에서 조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특징이 관찰되고 있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자녀 양육 지원정책은 부모가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직접적인 재정적 비용을 감면해 줌으로써, 그리고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는데 직면하는 장애요인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모가 원하는 출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따른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감소되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녀 수가 증가하게 된다. 국민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차원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수가 증가하고 실제로 원하는 수 만큼의 자녀 출산을 실현할 수 있어 출산율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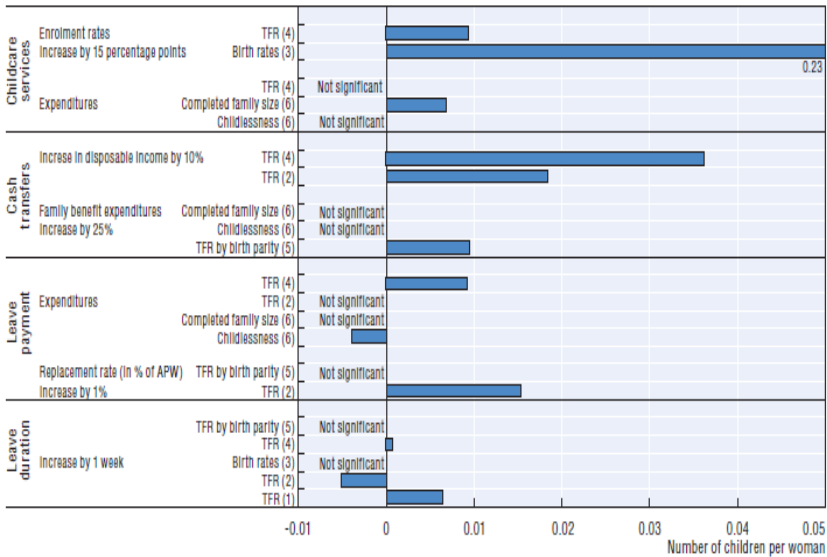
다양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 중 특정한 하나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정책의 효과성은 오직 다양한 정책들의 통합된 효과만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이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논하는 것이 시기 상조인 경우도 많다.

자녀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성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2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연구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가, 정책 그리고 문화적 배경들이 각기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유형의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이 국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고 이제까지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



자료: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첫째, 가족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가족 수당 정책이 자녀 양육 비용을 2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출산율은 단지 5%만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금 지원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좀 더 젊을

연령에 날도록 하는데 효과를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결과마다 다양하다. 이러한 사실은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부모가 자녀 출산 시기를 좀 더 앞당기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지적한다.

현금 지원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미비한 효과만을 갖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된다. 가족 수당과 같은 재정적인 지원은 실제로 급여액 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자녀 양육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의 일부분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재정적 지원은 저소득층의 출산 행태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중산층 이상 부모의 출산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가족수당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가진 부모 모두에게 지원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여성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둘 때 포기해야 하는 소득을 보상해 주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출산 축하금이나 자녀 양육 수당과 같이 일회성 혹은 자녀 출생 이후 단기적인 기간 동안만 지원되는 경우 자녀 양육기 전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재정적인 지원은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도록 하는 것보다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더 낳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수당과 같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족 수당 제도가 발달한 프랑스에서도 가족 수당 보다는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한 조세 감면 정책이 특히 중산층 이상 사람들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 프랑스는 세 번째 자녀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조세 감면의 1% 증가가 세 번째 자녀를 낳을 확률을 0.05%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정책 중 시간 지원 정책으로서 육아휴직, 파트타임 근로, 유연한 근로 시간의 도입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추진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에서 출산율에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육아 휴직 기간과 급여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와 분위기도 휴가 기간과 급여 수준 못지않게 중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육아 휴직 기간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한 반면, 급여 수준은 출산 행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자녀수보다는 자녀를 낳는 시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적 지원과 휴가 정책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 시설과 보육 도우미와 같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출산 의도와 출산 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 서비스의 제공은 둘째 자녀 이상의 출생에 영향을 미쳐 여성이 낳는 총 자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보육 서비스의 이용 및 비용 지원 수준이 포괄적일 때 그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정책 이외에도 사회 문화적 환경 역시 출산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시간 야간 근로와 주말 근로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가져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남성이 가사와 육아의 많은 부분을 도와 줄 때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유럽의 경우 남성이 첫째 자녀를 돌보는 것이 둘째 자녀 출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내 가사와 육아 활동을 부부가 평등하게 분담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1. 현금 지원 정책

가. 조세 감면 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면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현재 국내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은 부양자녀 유무 및 수에 따른 인적 공제, 그리고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일정 한도 이하의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에 대해 과세대상소득을 감면해 주는 특별 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득 공제는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공제로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 사항은 기타 다른 항목의 소득 공제 사항과 함께 고려되어 과세대상소득을 결정하는데 반영된다. 결정된 과세대상소득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를 초과하여 지불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돌려받고 있는데 이때 환급 받는 금액을 일반 국민들은 조세 감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매해 연말 정산 시 추가적으로 지불한 소득세를 일시불로 환급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최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다음과 같이 확대 되었다.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기본공제로서 2008년에는 20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였으며 2009년에는 기본공제 액수가 부양자녀 1인당 1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추가공제로서 6세

26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이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다자녀추가공제로 2008년까지 자녀 2인인 경우 추가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도에 자녀 2인 경우 100만원, 자녀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공제에 초과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2010년 7월 5일부터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자동차 1대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소득 공제를 통한 세제 지원은 역진적인 효과가 있어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프랑스의 경우 현금수당 지원은 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고소득층의 경우 세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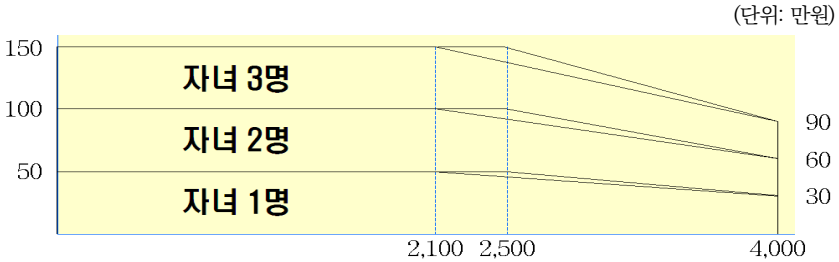
〈표 2-1〉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현황 ('13. 07. 현재)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역
세제지원 (소득공제)	기본공제	· 자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	· 6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 ·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 해당자녀 연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인: 연 100만원 · 자녀 2인 초과: 연 100만원 + 초과 1인당 연 200만원
	교육비 공제 (한도)	· 영유아: 1인당 300만원 · 초중고: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의료비 공제 (한도)	· 자녀의료비 중 총 급여의 3% 초과금액 (최대 700만원)
	보험료 공제	·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초과 금액
세제지원 (비과세)		·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¹⁾

주: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3). 「소득세법」.

한편, 정부는 2013년 8월 8일 자녀장려세제(CTC) 신설과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⁴⁾. 자녀장려금과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와 자녀교육비 등 특별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⁵⁾. 단,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배제된다.

[그림 2-2] 자녀장려금 소득구간별·자녀수별 지급계획



자료: 기획재정부(2013), 『2013년 세법개정안』, p.43.

<표 2-2>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 전환 계획

공제항목	현행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전환
자녀관련 인적공제	- 기본공제: 20세 미만 자녀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 1명 당 100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2명:100만원 * 자녀2명초과: 100만원+2명초과 1명당 200만원	- 자녀1~2명: 1명당 15만원, 자녀 2명초과: 30만원 +2명초과 1명당 20만원
자녀관련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

자료: 기획재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4)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5·§100의36①·§100의37① 신설
 5) 소득세법 §59의2·§59의4 및 조세특례제한법 §86의3① 신설

나. 현금 수당 제도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입양 아동 양육 수당,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장애 아동 수당 등이 있다 (<표 2-3> 참고). 이들 수당은 대부분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제외하고는 한부모와 장애 자녀라는 이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해당되며, 해당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 가정만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 국내 가족 관련 현금 지원 현황 (2013년)

정책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	입양아동 - 일반(~13세미만) - 장애(~18세미만)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족 아동 (만 12세 미만)	차상위 이하 재가 장애아동
지원 금액	- 일반: 월10만원 - 장애: 중증(월 627천원), 경중 (월551천원)	- 5만원/월 - 미혼모·부자, 조손 가정 5세 미만 아동 5만원 추가지원	- 중증: 기초(20만원), 차상위(15만원) - 경중: 1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만0~1세 차상위 이하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 지원하던 양육수당은 2011년 0~2세로 확대되었으며 액수도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부터 이러한 양육수당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0~5세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면에서 여전히 한계성은 있다.

〈표 2-4〉 가정양육수당 대상 및 급여 확대 추이

연도	지원 연령	지원 대상	지원액
2009년 7월 ~2010년	만0~1세	- 차상위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	- 월10만원
2011년	만0~2세	-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4인기준) 173만원이하	- 만0세 (월20만원) - 만1세 (월15만원) - 만2세 (월10만원)
2012년	만0~2세 (장애아동: 만0~5세)	- 차상위 저소득층: 월가구소득(4인기준) 180만원이하 - 농어촌 아동: 농지5만m ² , 농어업 외 소득 연간 4천만원 미만(1자녀기준) - 장애 아동: 소득 무관	- 차상위 이하: 만0세(월 20만원), 만1세(월15만원), 만2세(월10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보육료지원단가의 45% - 장애아동 양육수당: 만0~2세(월20만원), 만3세~취학전 만5세(월10만원)
2013년	만0~5세	- 전체	- 만0세 (월 20만원) - 만1세 (월 15만원) *농어촌양육수당(월 177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월 20만원) - 만2세 (월 10만원) *농어촌양육수당(월 156천원) *장애아동양육수당(월 20만원) - 만3세~취학전 (월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중앙 정부는 현금성 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기타 바우처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다⁶⁾. 바우처 지원은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가구가 영유아와 관

6) 한국복지패널은 기타 바우처로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아동돌봄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아동 리더쉽 증진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 바우처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련하여 지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많은 경제적인 여력을 지닐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지원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자녀 양육을 위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 정책은 대부분 출산 장려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금은 출산 이후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분할금인 경우에도 영아 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

가. 발달 과정과 현황

1999년부터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던 시설 보육료 지원은 이후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2011년 전체 0~5세 영유아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2년에는 0~2세 전체 영아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을 하게 되었다. 2012년에 만5세에 대해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4세 유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체 0~5세 영유아로 확대되어 명실공히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소득 계층별 만0~4세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 소득 계층별 만5세 보육료 지원 변화 등 2000년 이후 확대된 정부의 시설 보육료 지원 추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5>,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5〉 시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추이 (1999~2013)

	1999	2000	2004	2005	2006	2007	2009	2011	2012	2013
만 0~1세	법정 저소득층				법정저소득층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70%	전체	전체
만 1~2세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만 3~4세										
만 5세	법정 저소득층 + 기타 저소득층 (만0~4세 보육료 지원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90%(도시) 100%(농촌)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전체			

자료: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사업 안내

〈표 2-6〉 소득 계층별 만0~4세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율 추이 (1999~2013)

연도	지원계층	보육료지원 단가 대비 지원비율(%)	가구계층구분기준	소득인정액 (만원, 4인가구 기준)
1999	1	100	법정	-
	2	4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	102
2000	1	100	법정	-
	2	4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46.7%	105
2001	1	100	법정	-
	2	40	특정한 기준 없음	105
2002	1	100	법정	-
	2	40	특정한 기준 없음	110
2003	1	100	법정	-
	2	40	특정한 기준 없음	120
2004	1	100	법정	-
	2	60	최저생계비 120%	127
	3	40	최저생계비 150%	159
2005	1	100	법정	-
	2	80	최저생계비 120%	136
	3	6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	170
	4	3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60%	204
2006	1	100	법정	-
	2	100	최저생계비 120%	140
	3	7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	176
	4	4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	247
2007	1	100	법정	-
	2	100	최저생계비 120%	144
	3	8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	184
	4	5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	258
	5	2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369

3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표 2-6〉 계속

연도	지원계층	보육료지원 단가 대비 지원비율(%)	가구계층구분기준	소득인정액 (만원, 4인가구 기준)
2008	1	100	법정	-
	2	100	최저생계비 120%	151
	3	8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	199
	4	6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	278
	5	3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398
2009	1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58
	2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339
	3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
2010	1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258
	2	6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60%	339
	3	3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
2011	1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80
2012	1(0-2세)	100	전체	-
	2(3-4세)	1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524
2013	0~5세	100	전체	-

자료: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표 2-7〉 소득 계층별 만5세 보육료 지원 추이 (2000~2013)

연도	지원 계층	보육료 지원액 (원)	가구계층구분기준	소득인정액 (만원, 4인가구 기준)
2000	1	112,000	법정	만0~4세 보육료지원 가구계층구분과 동일
	2	112,000	기타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2001	1	115,000	법정	만0~4세 보육료지원 가구계층구분과 동일
	2	115,000	기타저소득층	
2002	1	119,000	법정	만0~4세 보육료지원 가구계층구분과 동일
	2	119,000	기타저소득층: 농어촌	
	3	86,000	기타저소득층: 국고보조시설	
	4	100,000	기타저소득층: 민간보육시설	
2003	1	125,000	법정	만0~4세 보육료지원 가구계층구분과 동일
	2	125,000	기타저소득층: 농어촌	
	3	90,000	기타저소득층: 국고보조시설	
	4	105,000	기타저소득층: 민간보육시설	
2004	1	131,000	법정	만0~4세 보육료지원 가구계층구분과 동일
	2	131,000	기타저소득층: 농어촌	
	3	94,000	기타저소득층: 국고보조시설	
	4	110,000	기타저소득층: 민간보육시설	
2005	1	153,00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80%	272

〈표 2-7〉 계속

연도	지원 계층	보육료 지원액 (원)	가구계층구분기준	소득인정액 (만원, 4인가구 기준)
2006	1	158,000	도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90%	318
	2	158,000	농어촌: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353
2007	1	162,00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369
2008	1	167,000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	398
2009	1	172,0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
2010	1	172,0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
2011	1	177,000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80
2012	1	200,000	전체	-
2013	1	220,000	전체	-

자료: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종일제를 기준으로 2013년 현재 0세 394천원, 1세 347천원, 2세 286천원, 3세 220천원, 4세 220천원, 5세 22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2-8〉 보육료 지원 단가 추이 (1999~2013)

(단위: 원, 경상가격)

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1999	213,000	213,000	176,000	109,000	109,000	109,000
2000	219,000	219,000	181,000	112,000	112,000	112,000
2001	225,000	225,000	186,000	115,000	115,000	115,000
2002	232,000	232,000	192,000	119,000	119,000	119,000
2003	243,000	243,000	201,000	125,000	125,000	125,000
2004	257,000	257,000	212,000	131,000	131,000	131,000
2005	299,000	299,000	247,000	153,000	153,000	153,000
2006	350,000	308,000	254,000	158,000	158,000	158,000
2007	361,000	317,000	262,000	180,000	162,000	162,000
2008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167,000
2009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172,000
2010	383,000	337,000	278,000	191,000	172,000	172,000
2011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177,000
2012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200,000
2013	394,000	347,000	286,000	220,000	220,000	220,000

자료: 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34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보육사업 총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에 전체 복지부 예산 중 2.75%를 차지하던 보육사업 예산은 2013년 16.26%로 증가하였다. 이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0.1%에 머무르던 비중이 2009년도에 0.7%로 증가하여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유아 교육비 지출을 제외하고 보육 서비스에만 한정해서 볼 때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6%로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0.9%), 스웨덴(0.9%), 노르웨이(0.9%), 핀란드(0.8%), 덴마크(0.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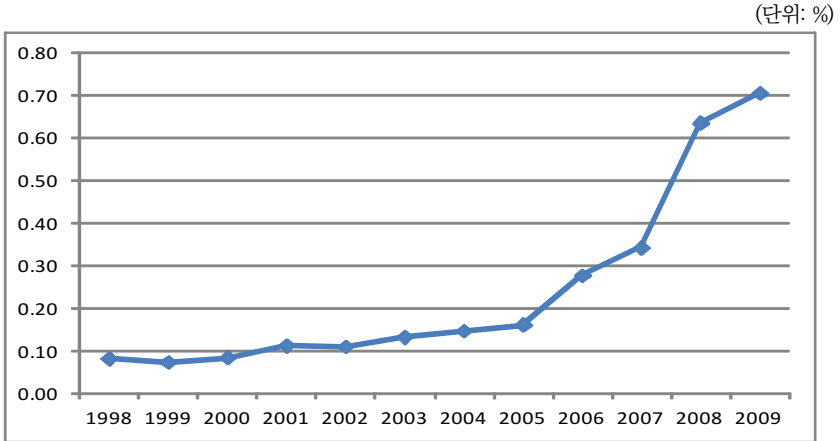
〈표 2-9〉 보육사업 총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정부 예산 추이 (2000~2012)

(단위: 백만원, %)

	보육사업총예산	보건복지부예산	정부예산	복지부 예산 중 보육사업 예산 비중
2000	145,959	5,310,021	88,736,307	2.75
2001	170,563	7,458,139	99,180,065	2.29
2002	210,279	7,749,477	109,629,790	2.71
2003	299,939	8,502,212	118,132,320	3.53
2004	403,798	9,232,154	120,139,368	4.37
2005	600,091	8,906,745	135,215,587	6.74
2006	791,008	9,706,335	146,962,504	8.15
2007	1,043,474	11,529,241	156,717,719	9.05
2008	1,417,780	16,021,279	179,553,700	8.85
2009	1,710,430	19,451,104	203,549,740	8.79
2010	2,127,509	19,533,546	201,283,456	10.89
2011	2,478,380	20,736,845	209,930,268	11.95
2012	3,028,567	22,181,475	223,138,378	13.65
2013	4,131,345	25,405,558	240,670,169	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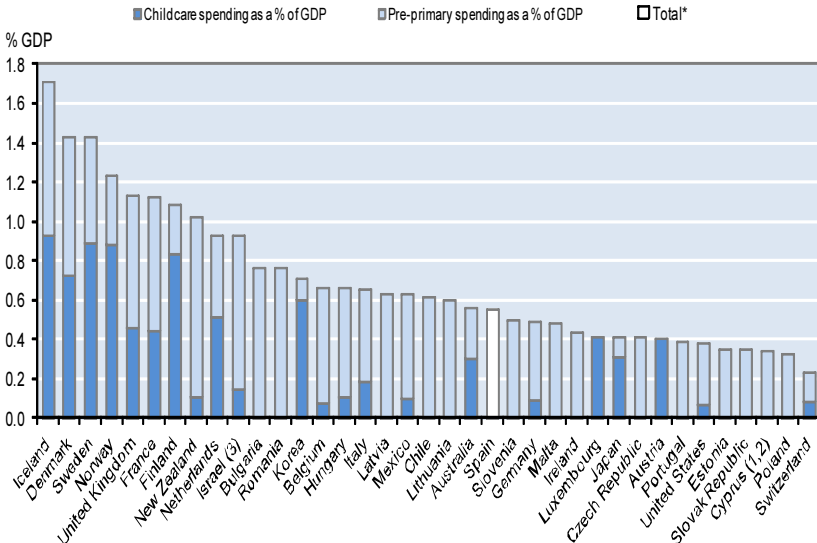
자료: 2000~2012년은 한국개발연구원(2012) “결혼·출산·육아 지원 사업군 심층 평가”, 2013년은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그림 2-3] 국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3)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그림 2-4] OECD 국가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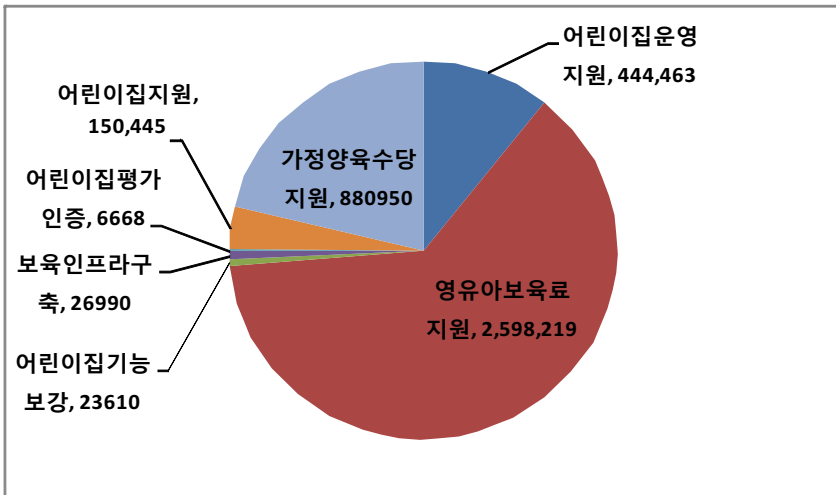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3)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국내 보육 사업의 예산은 공급자에 대한 지원 보다는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 분야의 항목별 예산 비중을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62.9%)과 가정양육수당지원(21.3%) 등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전체 보육 지원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 교사 인건비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전체 보육 예산의 약 15%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5] 2013년도 보육 분야 항목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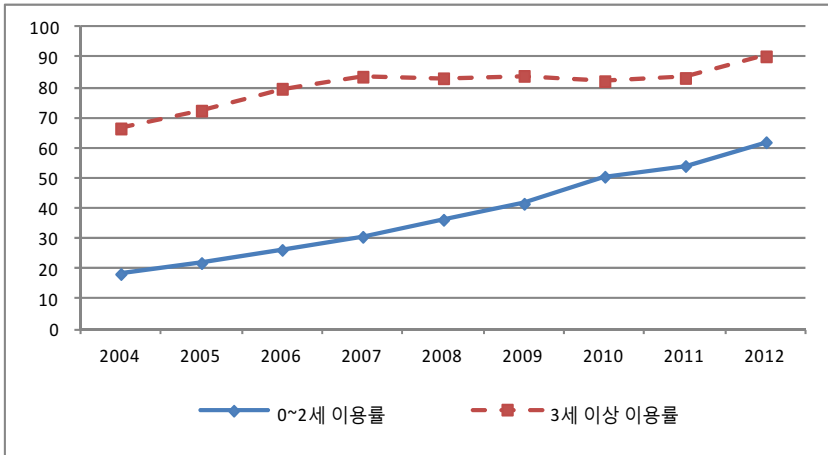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나.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과 관련한 이슈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이후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3세 이상 유아의 시설 이용률 보다 0~2세 영아의 시설 이용률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2004년 18.3%에 불과하던 0~2세 시설 이용률은 이후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여 2012년 62.0%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 국내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2010년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32.6%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덴마크(65.7%), 네덜란드(60.6%), 아이슬란드(55.7%), 노르웨이(54.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0~2세 보육 시설 이용률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이 여성 고용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2009년도 25~54세 여성 고용률은 덴마크 82.9%, 네덜란드 79.3%, 아이슬란드 85.7%로 나타나고 있다. (OECD Family database, 2013). 국내 3세 이상 아동의 시설 이용률은 2012년 현재 약 90% 수준을 보이고 있어 선진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대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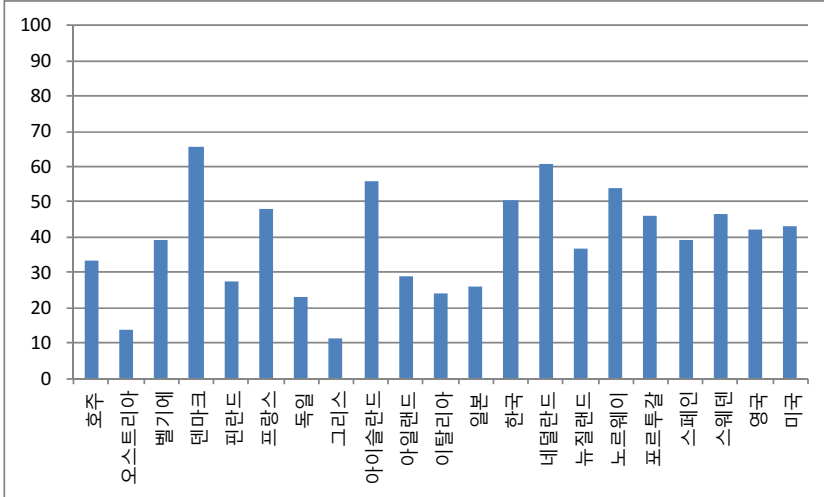
[그림 2-6] 국내 0~2세 및 3세 이상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2004~2012)



자료: 보육시설 이용아동수는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 원아수는 교육통계서비스 유아교육통계, 전체 아동수는 통계청 주민등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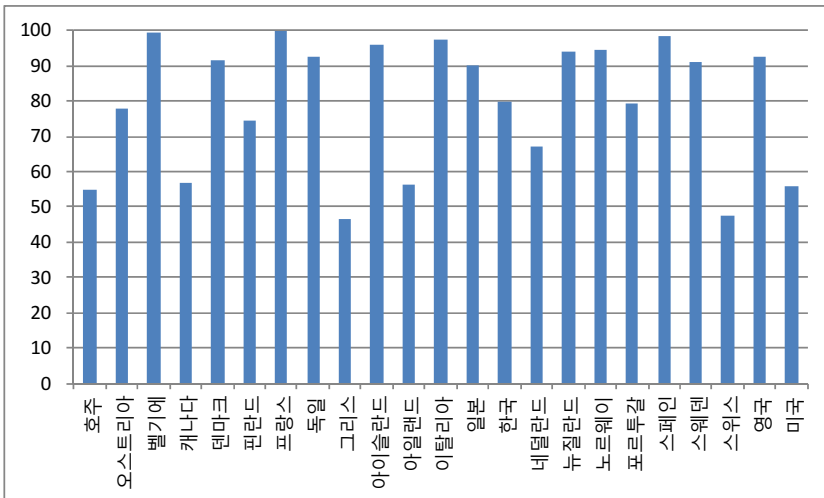
38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림 2-7] OECD 국가의 0~2세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2010)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3)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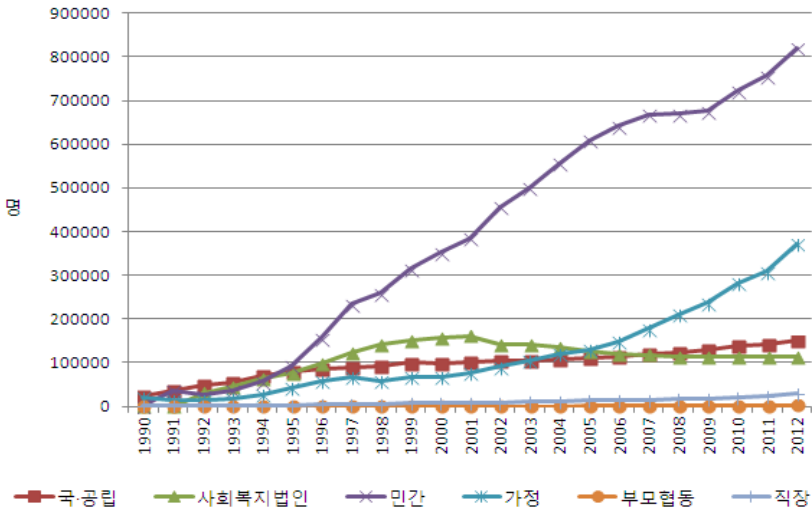
[그림 2-8] OECD 국가의 3세 이상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3)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는 보육 시설 수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민간보육시설의 수가 급증하여 전체 보육 시설의 90%를 차지하게 되었다. 민간보육시설 수의 증가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2004년 전체 보육 시설 이용 아동 중 45%를 차지하던 민간 보육 시설 아동은 2012년 80%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보육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지만 대부분의 영유아가 민간 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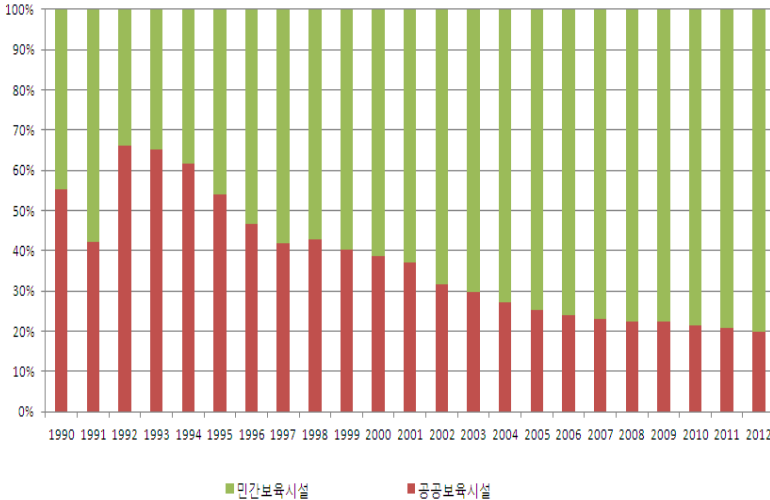
[그림 2-9]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시설 유형별 증가 추이 (1990~201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40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림 2-10]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공공민간⁷⁾ 유형별 증가 추이 (1990~2012)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은 2004년 318,300원, 2009년 365,500원, 2012년 245,800원으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감소하였다(〈표 2-10〉 참고).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0.8%, 2009년 14.1%, 2012년 6.6%로 역시 부담 수준이 줄어들었다.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총 보육교육 비용으로 환산해 보았을 때도 감소 추이가 발견되었으나 감소 양상은 아동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영아의 경우 월평균 총 보육교육 비용은 감소한 반면 3~5세 유아의 경우 월평균 총 보육교육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7) 공공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부모가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포함한다. 민간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한다.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1인당 기관에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순 보육교육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관에 지출하는 추가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 기관에 지불하는 전체 비용은 감소하였지만 순 보육교육비와 추가 비용의 변화는 기관 유형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시설의 경우 유치원 보다 정부 지원에 따라 순 보육교육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추가 비용의 증가는 유치원이 보육 시설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표 2-10〉 영유아 월평균 보육교육 지출 비용 추이 (2004, 2009, 2012)

(단위: 천원, %)

구분		2004	2009	2012
영유아 가구당 총 보육교육 비용	전체	318.3	365.5	245.8
	가구당 소득 대비 비중	10.8	14.1	6.6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	전체	188.0	195.1	196.3
	0세	76.7	74.0	62.7
	1세	110.0	115.2	109.2
	2세	132.9	170.6	129.7
	3세	175.5	250.9	264.3
	4세	235.5	292.7	294.8
	5세	271.1	303.7	328.3
영유아 1인당 기관 이용 비용	전체	171.0	197.9	161.7
	순 보육교육비	135.0	132.4	78.9
	추가비용	36.0	65.5	82.7
	어린이집 (전체 비용)	164.7	168.1	88.8
	순 보육교육비	135.2	114.3	24.8
	추가비용	29.5	53.8	63.9
	유치원 (전체 비용)	173.8	229.3	193.8
	순 보육교육비	126.8	141.4	86.9
추가비용	47.0	87.9	106.9	

주: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해당연도 명목 가격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2010년도 실질 가격으로 환산함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여성부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1),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서.

3. 육아 휴직 지원 정책

가. 제도의 발달 과정

육아휴직제도는 개인이 노동시장 참여와 육아 책임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육아를 전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도입된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과정을 수차례 거치며 변화되어왔다. 특히, 1995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제도 적용 대상이 여성 근로자에서 남성 근로자까지 확대되었고, 2001년 모성보호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모성보호와 함께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이 제도 운용의 주요 목적 및 기본이념으로 명문화 되었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을 ‘여성 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에서 ‘근로자’로 새롭게 명시한 것은 여성이 육아에 대한 책임을 일차적으로 진다는 전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급 여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제도 내 육아휴직급여제도가 신설되어 육아휴직제도 신청 근로자의 소득보전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되었고,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밖에 적용 범위 확대(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벌칙조항 강화(육아휴직 보장 및 종료 후 사업주의 의무책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추가, 불리한 처우 및 해고에 관한 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금지 및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업무·동등 수준 임금 지급 직무로의 복귀 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한 것은 육아휴직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후 2006년에는 육아휴직제도 신청 대상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

서 생후 3년 미만된 영·유아로 확대되었고,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 대상은 2010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시간제 육아휴직’의 형태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시행되어 육아휴직 급여율 뿐만이 아니라 사용에서의 시간적 유연성을 확대했다.

2001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그 지원 수준이 2002년 월 20만원에서 시작하여 꾸준히 상승했다. 2003년 월 30만원, 2004년~2006년 월 40만원, 2007년~2010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육아휴직 급여 중 15퍼센트를 육아휴직 종료 이후 근로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 지급하여 육아휴직자의 근로복귀 유인을 강화하였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제도, 그밖에 육아휴직 관련 제도 변화 과정 및 주요 내용은 <표 2-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육아휴직제도 변화 과정 및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88.4.1.	'87.12.4.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	남녀고평법 제11조
'89.4.1.	'89.4.1.	-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에 포함시킴	남녀고평법 제11조
'95.8.4.	'95.8.4.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남성은 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남녀고평법 제11조
'01.11.1.	'01.8.14.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남녀 불문)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종료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남녀고평법 제19조

44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표 2-11〉 계속

시행일	개정일	주요 내용	비고
'01.11.1.	'01.8.14.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근거규정 신설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01.11.1.	'01.10.31.	- 육아휴직 급여액: 월 2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2.12.30.	'02.12.30.	- 육아휴직 급여액: 월 3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4.2.25.	'04.2.25.	- 육아휴직 급여액: 월 4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6.3.1.	'05.12.30.	-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단, '08.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 -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	남녀고평법 제19조
'07.4.27.	'07.4.27.	- 육아휴직 급여액: 월 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3
'08.6.22.	'07.12.21.	-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면 휴직 불가하다는 규정 삭제	남녀고평법 제19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가능토록 함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간 -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려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10.2.4.	'10.2.4.	-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단, '08.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	남녀고평법 제19조
'11.1.1.	'10.12.31.	-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 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1.9.22.	'11.6.3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도입 * 육아휴직급여액×(단축된 소정근로시간/단축된 소정 근로시간)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12.8.2.	'12.2.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의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	남녀고평법 제19조 남녀고평법 제19조의2

자료: 고용노동부(2013), 「출산 및 육아휴직현황 (이나라지표참고자료)」, 10쪽에서 발췌.

나. 최근 정책 내용

(1) 출산전후휴가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 휴가의 대상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모두가 포함되며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며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로서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2년 8월 2일부터 유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표 2-12〉 출산전후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3)

구분	내용
휴가기간 (주)	12.8주 (90일)
급여 수급 자격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휴가급여 지급여부	휴가급여가 지급됨
급여액	60일 동안에는 급여 100% 지급,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정부가 135만원 지급
급여지원 주체	고용보험 + 사업주

자료: 고용노동부 (2012), <http://www.moel.go.kr/>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기간 90일 동안 지급되는데 처음 60일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전액이 지급되며, 나머지 30일 동안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월 13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1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로써 출산일 전후 3~5일 사용 가능하며 최초 3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2년 8월 2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표 2-1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주요 내용 (2013)

구분	내용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휴가기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일 전후 3~5일
급여 제공 기간	3일
급여액	임금의 100%
고용보장	보장됨
급여 지원 주체	사업주

자료: 고용노동부 (2012), <http://www.moel.go.kr/>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녀 연령이 만6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과거에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고정된 액수 (월 50만원)가 지급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상한액 월 1,000,000원 그리고 하한액 월 500,000원 범위 안에서 통상 임금의 40%가 지원되고 있다. 출산 후 여성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동일한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만 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3. 4).

〈표 2-14〉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내용 (2012)

구분	내용
휴가기간	동일한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모 1명당 12개월
자녀 연령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음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 30시간 이하 -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하여야 함
아버지 할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아버지 할당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자녀 연령 만6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맞벌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12), <http://www.moel.go.kr/>

(4) 기타 출산 전후 모성 수당 및 보조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외에 지원되는 모성 수당 및 모성 보조금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하는 해산급여가 있다.

〈표 2-15〉 출산전후 휴가급여 외 모성 수당 및 모성 보조금

구분	내용	
출산축하금	- 지자체에서 일시금 혹은 분할급의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둘째아 혹은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 - 수급자격과 지원액수는 지자체별로 다양함	
해산급여	자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액	출생 영아 1명당 500,000원

자료: 고용노동부 (2012), <http://www.moel.go.kr/>

다. 육아 휴직 제도 관련 이슈

급여율과 사용에서 제도의 활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서구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2-16〉을 통해 볼 수 있듯, 2012년 현재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자의 수를 보면, 급여수준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하던 2007년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해인 2011년에 그 전년도에 비해 급여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 수준의 변화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그 결과 급여자 수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수준
	전체	여성		남성			
2002	3,763	3,683	97.9	78	2.1	3,087	월 20만원
2003	6,816	6,712	98.5	104	1.5	10,576	월 30만원
2004	9,303	9,122	98.1	181	1.9	20,803	월 40만원
2005	10,700	10,492	98.1	208	1.9	28,242	월 40만원
2006	13,670	13,440	98.3	230	1.7	34,521	월 40만원
2007	21,185	20,875	98.5	310	1.5	60,989	월 50만원
2008	29,145	28,970	98.8	355	1.2	98,431	월 50만원
2009	35,400	34,898	98.6	502	1.4	139,724	월 50만원
2010	41,732	40,913	98.1	819	1.9	178,121	월 50만원
2011	58,137	56,735	97.6	1,402	2.4	276,261	월 또는 일 통상임금의 40%
2012	64,069	62,279	97.3	1,790	2.7	357,797	월 통상임금의 40%

자료 :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보험 DB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성별로 볼 때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비율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 내외에서 2.7%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 수가 여전히 여성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2002년에 비해 2012년 남성에게 지원된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22.9배 증액되었지만, 전체 비율에서 남성 비율이 2% 정도로 나타나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이 여전히 낮다. 그러나 〈표 2-16〉에서 제시되었듯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 이후 남성 육아휴직급여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은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남성들에게 더욱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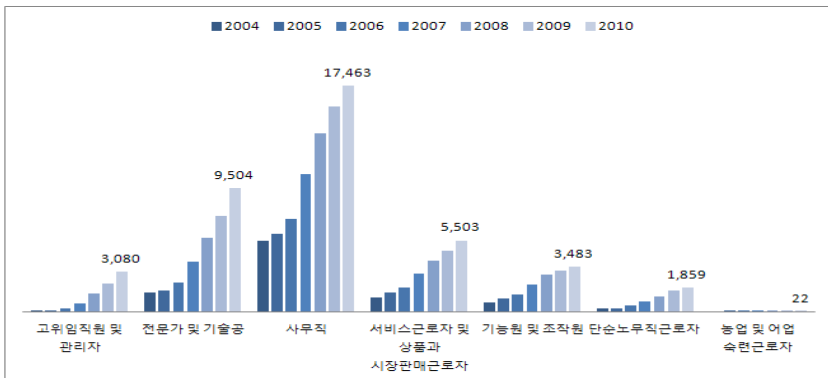
과거 아버지들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은 ‘아버지 할당제’와 같은 구체적 정책 마련 노력 및 변화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아버지 할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단순히 정책담론에 그치지 않고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등을 통한 실제적 제도화로 가

시화되기도 하였다(윤홍식, 2006: 63쪽에서 재인용). 2006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자녀 1인당 부부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내용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제도를 아버지 할당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당시의 급여 수준이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였기 때문에 생계부양자인 아버지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즉 제도적으로 정률제로 변화하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할당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은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데 따르는 비용을 높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2007년 1월 새로 개정된 육아휴직 규정은 급여기간과 지원액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아졌다. 출산 후 12개월 동안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남성이나 여성은 휴직 전 순소득의 65-67%에 상응하는 육아수당(Elterngeld)을 받게 되었다. 한쪽 부모만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수당은 12개월간 받을 수 있지만, 한쪽은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하지 않은 다른 한쪽이 적어도 2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수당은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어머니는 2011년 현재 11.7개월 육아휴직을 하지만 아버지는 3.3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 육아수당을 최대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아버지들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버지가 최소 2개월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2개월치 육아수당을 상실하도록 제도를 만듦으로써 육아휴직에서의 아버지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다 (Thiemann, 2013).

소득계층별로 육아휴직 수혜를 보더라도 정규직-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혜자(2011)에 따르면, 여성 육아휴직급여 수혜는 사무직 및 전문직, 1,000인 이상 모성보호제도가 안정화가 된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2010년 현재 사무직은 17,463명

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고, 전문가 및 기술공은 9,504명으로 23.2%였다. 육아휴직 급여액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승한 2007년을 기점으로 수혜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주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공, 사무직에서 수혜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고소득 계층의 소득 대체율이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적용자가 많고 직장내 분위기가 육아휴직 활용이 가능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종에서 육아휴직 수혜자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서비스근로자, 기능직 및 조직원, 단순노무직의 증가추세가 완만한 것은, 2007년 제도 변화 때 소득대체율의 증가가 가장 높았던 저소득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종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적용자가 적고 또한 직장내 분위기로 인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그림 2-11] 직종별 육아휴직 급여 수혜자의 추이 (여성 2004~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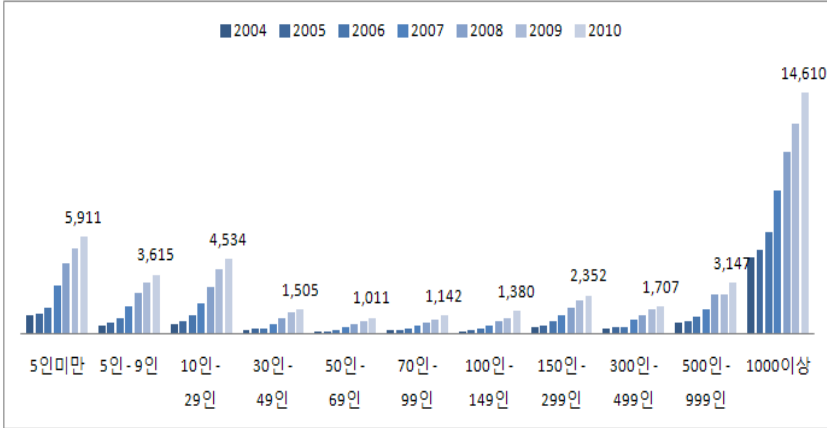


자료: 고용보험 DB, 권혜자(2011)에서 재인용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급여 수혜자는 30인 미만 소기업 근로자가 34.3%를 차지하는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가 43.4%를 차지하고 있다. 육아휴직 수혜자는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크게 증가했다.

5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림 2-12]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혜자수의 추이 (2004~2010)



자료: 고용보험 DB, 권혜자(2011)에서 재인용

<표 2-17> 산전후 휴가 수혜자 중 육아휴직 수혜자의 비율 (2010)

<연령별>	산전후	육아휴직	비율
20~24세 이하	6	7	-
25~29세 이하	1,729	1,078	62.3
30~34세 이하	28,350	16,498	58.2
35~39세 이하	37,027	19,338	52.2
40~44세 이하	8,103	3,745	46.2
45~49세 이하	519	246	47.4
50세 이상	8	2	-
<사업장 규모별>	산전후	육아휴직	비율
5인 미만	11,226	5,911	52.7
5인 - 9인	7,913	3,615	45.7
10인 - 29인	10,762	4,534	42.1
30인 - 49인	4,054	1,505	37.1
50인 - 69인	2,697	1,011	37.5
70인 - 99인	3,078	1,142	37.1
100인 - 149인	3,327	1,380	41.5
150인 - 299인	5,254	2,352	44.8
300인 - 499인	3,347	1,707	51.0
500인 - 999인	5,303	3,147	59.3
1000이상	18,781	14,610	77.8
합계	75,742	40,914	54.0

자료 : 고용보험 DB, 권혜자(2011)에서 재인용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활용하는 비율도 젊은 연령계층일수록,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전후 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의 비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2.7%이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7.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8〉 지난 3년간 통상임금수준별 육아휴직급여 활용추세

(단위: %, 명)

	2008년	2009년	2010년
50만 미만	85.0	85.2	90.2
50~60만 미만	0.0	0.0	0.0
60~70만 미만	0.0	0.0	0.0
70~80만 미만	0.2	0.0	0.0
80~90만 미만	0.4	0.0	0.0
90~100만 미만	0.5	0.0	0.0
100~120만 미만	1.3	0.0	0.0
120~150만 미만	2.2	0.0	0.0
150~200만 미만	2.4	0.1	0.0
200만 이상	7.8	13.8	9.8
인원합계	29,145	35,051	41,5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고용보험DB,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 운영사업 1차년도 최종보고서
〈표 1-5-5〉 재인용.

소득계층별로 보면 통상임금수준과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 간에는 강한 비선형(U형)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통상임금 수준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2010년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이 아주 낮아 소득대체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근로자가 전체 육아휴직급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높은 소득 수준이 복귀가 보장되어 있는 안정된 일자리임을 의미하거나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의 제도 변화는 소득수준별로 육아휴직 이용률의 차이를 가져왔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변화의 효과를 추정

한 김정호(2012)에 의하면, 월소득 125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으로 개편 전과 지원액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 월소득 125만원 초과 250만원 미만인 그룹에 대해서는 휴직 급여가 임금 대비 약 10% 증가하였고, 월소득 250만원 이상인 그룹은 휴직급여가 월 100만원으로 전에 비해 월 50만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제도 변화로 인해 육아휴직 이용률이 총 2.58%p 증가한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월소득 250만원 이상 근로자로 이용률이 39.22%p 증가했다. 월소득 125-250만원 집단은 이용률이 1.62%p 정도만 증가했으며, 월소득 125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이용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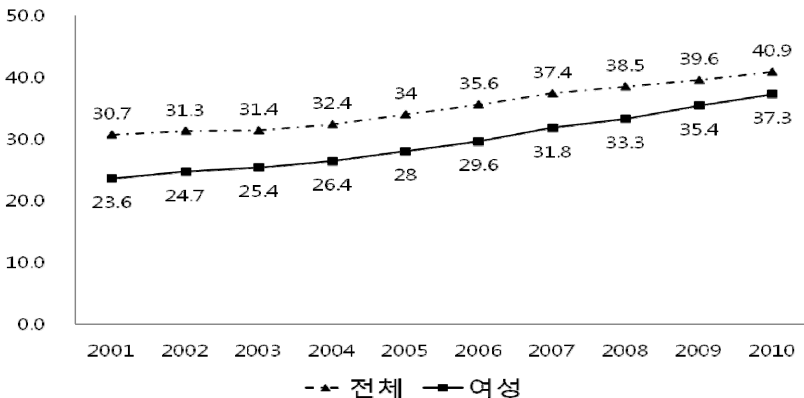
김미주(2006)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 수준이 사용한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육아휴직 급여수준의 소득보전 수준이 낮은 상대적 고임여성의 활용률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을 변수로 한 분석 결과 역시 본인의 월평균 임금 수준과 육아휴직 활용 여부에 관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 월평균 임금수준이 증가할수록, 육아휴직 활용 가능성이 1.8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현실에서 가구의 경제적 조건이 좋아야 제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김미주, 2006).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 수혜자들은 사무직과 전문직,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제도의 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는데,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서 근속 180일 이상(산전후 휴가는 휴가종료일 이전 180일)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은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에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의 소

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여성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 수준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근로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위 근로자에 대한 양육 지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그림 2-13]에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비중은 현재 37.3%이며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고용보험피보험자에 한정된 모성보호제도는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림 2-13]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피보험자 비중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고용보험DB,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 운영사업 1차년도 최종보고서 [그림 1-5-3]에서 재인용.

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도 고용관계 형태에 따라 육아휴직의 수혜 자격은 크게 달라진다. 박선영 외(2011)에 의하면 2011년 8월 현재 25세 이상 40세 미만 가입기 여성임금근로자 가운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자들을 제외하고 72.2%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표 2-19〉 여성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 비율

(단위: 명,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정규직	1,367,661	305,007	1,672,668
	81.8%	18.2%	100.0%
비정규직	464,604	399,858	864,462
	53.7%	46.3%	100.0%
한시적근로자	410,746	144,920	555,666
	73.9%	26.1%	100.0%
기간제	341,450	90,384	431,834
	79.1%	20.9%	100.0%
시간제	55,641	226,410	282,051
	19.7%	80.3%	100.0%
비전형	59,725	170,222	229,947
	26.0%	74.0%	100.0%
파견	20,464	4,154	24,618
	83.1%	16.9%	100.0%
용역	30,029	7,710	37,739
	79.6%	20.4%	100.0%
특고	5,897	115,070	120,967
	4.9%	95.1%	100.0%
가내	3,335	28,565	31,900
	10.5%	89.5%	100.0%
일일	0	37,829	37,829
	0.0%	100.0%	100.0%
가입기여성임금근로자 전체	1,832,265	704,865	2,537,130
	72.2%	27.8%	100.0%

주: 가입 비대상 제외
자료: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박선영 외(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고용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81.8%인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53.7%밖에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가운데서도 특수고용직, 가내근로자,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근로자의 가입률이 크게 낮았다. 파견근로자의 가입률은 83.1%, 용역근로자는 7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4.9%, 가내근로자는 10.9%에 불과하고 일일근로자 중에는 가입자가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혜택의 수혜 조건인 고용보험의 미가입률이 높은 비정규직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옥(2012)이 실시한 30인 미만 서비스업 종사자 실태 조사⁸⁾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수혜에 있어 비정규직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및 활용 현황은 정규직에 크게 못미친다. 2006년 이후 첫 출산 당시 정규직이었던 여성 500명 중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여성은 68.8%였는데 반해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500명 중 47.0%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했다. 신청자 가운데서 실제로 휴가를 받은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92.2%, 79.6%로 나타났다. 신청을 해도 실제로 산전후휴가가 허용된 비중은 비정규직이 훨씬 낮다. 산전후휴가를 받은 여성 중에서 산전후휴가 급여를 수령한 비율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79.5%와 54.0%이었다.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25.5%p로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출산여성이 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모두 지급한 비율은 정규직의 50.4%, 비정규직의 20.2%였다. 육

8) 실태조사는 2006년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출산 당시 임금근로자였던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2006년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로 제한한 이유는 2001년부터 산전후휴가가 90일로 확대되었지만 2006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90일 산전후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기 때문이다. 현재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당시 고용관계 지위를 기초로 1,000명(비정규직 500명, 정규직 500명)을 조사했다.

아휴직도 산전후휴가에서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드러났다. 조사 대상 여성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 수혜자는 정규직 26.6%, 비정규직 10.0%로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제3장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국제 평가 지표

제1절 프랑스 가족 정책 평가 지표

제2절 OECD Family Database 지표

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국제 평가 지표

프랑스 사회보장청은 프랑스 가족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 하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따라 매해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프랑스 사회보장청, 2013). OECD Family database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OECD 회원국가 간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OECD, 2013). 본 절에서는 이러한 두 기관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 목표에 따라 어떻게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실제로 정책을 평가하고 있는가 파악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내 영유아 양육 지원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지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1절 프랑스 가족 정책 평가 지표

프랑스 사회보장청은 매년 사회보장 예산안(Projec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을 제출하면서 사회보장의 주요 영역인 질병, 은퇴, 근로자상해, 가족 및 재정 분야에 대한 정책 성과 보고서를 부록으로 하여 함께 제출하고 있다. “2013년도 가족 정책 성과 평가 보고서(Programme de qualité et d'efficience, Famille)”에서는 가족지원정책의 목적을 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면, ② 취약 계층 가족 지원, ③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④ 가족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지속성 유지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 정책의 목

적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14개 거시 지표와 18개 미시 지표를 활용하여 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동 지표들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사회보장부 조사연구평가통계국, 국립통계경제연구소, 가족수당공단, 사회보장청이다.

거시적인 지표는 모두 10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출산행태 및 자녀수 현황, 가족 수당 수급 현황, 영유아 보육지원 현황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거시 지표 내용은 <표 3-1>에 정리하였다. 거시적인 평가 지표에 출산행태와 자녀수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프랑스 가족 정책이 적정한 출산율 유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에서 가족 수당 및 보육 서비스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수당의 수급자 현황과 보육 서비스 공급 및 이용 현황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도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다.

<표 3-1>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 평가를 위한 거시 지표 (2013)

구분	지표명	자료 제공 기관
출산 행태 및 자녀수 현황	1. 출생아 수 및 출산율 동향	사회보장청
	2. 평균 출산 연령 및 총 자녀 수	사회보장청
	3. 총 가구원 수 및 자녀 수	사회보장청
가족수당 수급 현황	4. 가족수당 및 주거 수당 수급자수 증가, 보편적 수당 혹은 자산조사 수당 수급자 비중	가족수당공단/사회보장청
	5. 가족수당, 주거수당, 최소사회수당의 소득수준별 수급 비중	사회보장부 조사연구평가통계국
영유아 보육지원 현황	6. 0~2세 영아 100명당 보육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원 추이	사회보장부 조사연구평가통계국
	7. 0~2세 영아 100명당 보육 시설 정원 수 추이	가족수당공단/사회보장부 조사연구평가통계국
	8. 0~2세 영아 100명당 보육서비스 (보육사 및 보육 시설) 정원 수	가족수당공단
	9. 유형별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및 정부 지원 비중 - 개인별 이용 비용 (미시적 지표) - 정부 지출 수준 (거시적 지표)	가족수당공단/ 사회보장청
가족수당 수급현황	10. 주거수당 수급자 수 및 지출	가족수당공단/사회보장부 사회보장청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청(2013) 2013 Projec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 Annexe 1. Programmes de qualité et d'efficience Famille

미시 지표는 프랑스 가족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네 가지 목적 - 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면, ② 취약 계층 가족 지원, ③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④ 가족 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지속성 유지 - 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지표에 대해서 목표 수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가족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네 가지 목적 이외의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빈곤 감소, 일과 가정 생활 양립 등 사회 정책적인 지향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면은 "1-1. 소득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최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 생활 수준의 차이: 가족 특성별 비교"의 지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동 지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생활 수준 격차의 감소로서 전체 사회의 수평적 형평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취약 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 목적을 평가하는 지표로 "2-1. 소득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최소수당의 재분배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동 지표는 서로 다른 소득 집단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직적 형평성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취약 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로서 "2-2. 빈곤선 이하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수", "2-3. 직업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 비중", "2-4. 가족수당, 사회최소수당, 주거수당이 아동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2-5. 주거 수당 수급자의 소득 대비 비중"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지표들은 전체 사회의 빈곤 감소를 지향하고 있다.

셋째,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보육 서비스 관련 지표와 여성 취업률 및 육아 휴직 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보육 서비스 관련 지표로는 "3-1. 보육 서비스 제공 현황", "3-2. 2009~2012년 0~2세 영아에 대한 시설 보육 및 개인 보육사 충원 계획 목표 달성도", "3-3. 보육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분포", "3-4. 보육료 소득별 부과 비중",

"3-5.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률"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 관련 지표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여성 취업률 및 육아 휴직 관련 지표에는 "3-6. 여성 취업률 현황", "3-7. 육아 휴직 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자 중 여성 비중", "3-8. 육아 휴직 이후 취업 여성 비중", "3-9. 아버지 휴가 급여 수급자 비중"이 포함되어 있다. 동 지표들은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넷째, 가족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달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는 "4-1. 가족 수당 금고의 수입과 지출 비중", "4-2. 국가와 가족수당 금고 간 협정에 따른 보육 서비스 지출 완수"를 포함하고 있다.

〈표 3-2〉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 평가를 위한 미시 지표 (2013)

목적	지표명	목표	자료 제공처	정책수행 기관	
수평적 형평성					
1.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면	1-1 소득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최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 생활 수준 차이: 가족특성별(자녀수별, 양부모/한부모) 비교	생활수준 격차의 감소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사회 보장청	
수직적 형평성					
2.취약계층 가족 지원	2-1. 소득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최소수당의 재분배 효과	생활수준 격차의 감소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사회 보장청	
	빈곤 감소				
	2-2. 빈곤선 이하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수(한부모 가구 포함)	2007~2012 년 동안 1/3감소	국립통계경 제연구소	사회 서비스국	
	2-3. 직업이 없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 비중	감소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2-4. 가족수당, 사회최소수당, 주거수당이 아동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가족특성별(자녀수별, 양부모/한부모) 비교	빈곤율 감소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사회 서비스국	
2-5. 주거수당 수급자의 소득대비 비중: 가족특성별(자녀수별, 양부모/한부모, 계약혼) 비교	소득대비 비중 감소	가족수당 공단	사회 보장청		

〈표 3-2〉 계속

목적	지표명	목표	자료 제공처	정책수행 기관
3. 일과 가정 생활 양립 지원	보육 서비스 접근성 제고			
	3-1. 보육서비스 제공 현황 - 6세미만 아동 100명당 제공 가능한 보육서비스 정원 수 - 보육 시설 정원 충원율	2010년까지 0~2세 33%, 3~6세 90% 제공	가족수당 공단	가족수당 공단/사회 서비스국
	3-2. 2009~2012년 0~2세 영아에 대한 시설 보육 및 개인 보육사 충원 계획 목표 달성도 - 2009년 이후 확충된 보육시설 수 - 2009년 이후 0~2세 영아 중 추가적 으로 개인보육사에 의해 보육되는 아동수	-100,000개소 -100,000명	가족수당 공단	가족수당 공단/사회 서비스국/ 사회보장청
	3-3. 보육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분포 - 정부 지원 수준에 따른 지역별 0~2 세 영아 100명 당 보육 정원 수	지역격차감소	가족수당 공단	가족수당 공단/사회 서비스국
	3-4. 보육료 소득별 부과 비중 (보육서비스 유형별, 소득수준별, 가족유형별)	양육자 선택의 자유 강화	가족수당공단 /사회보장청	가족수당 공단
	3-5.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률		가족수당공단	
	일과 가정 생활 양립			
	3-6. 여성 취업률 현황 - 15~64세 여성 및 남성 취업률 - 자녀 수 및 자녀 연령별 여성과 남성 의 취업률 - 자녀 수 및 자녀 연령별 여성 경제 활동 참여율	여성 취업률 60%	사회보장청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고용노동부
	3-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자 중 여성 비중	자유로운 선택 강화	가족수당공단	가족수당 공단
	3-8. 육아휴직 이후 취업여성 비중	증가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고용노동부
3-9. 아버지 휴가급여 수급자 및 비중	증가	사회보건부 /조사연구 평가통계국	건강보험 전국공단	
4. 가족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 재정지원	4-1. 가족수당 급고의 수입과 지출 비중	균형	사회보장청	사회보장청
	4-2. 국가-가족수당 급고 간 협정에 따른 보육 서비스 지출 완수	100% 완수	사회보장청	가족수당 급고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청(2013) 2013 Projec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 Annexe 1. Programmes de qualité et d'efficience Famille

본 연구가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지표로서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 지표는 다음과 같다⁹⁾.

- 1-1 소득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최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 생활 수준 차이: 가족특성별(자녀수, 양부모/한부모) 비교
- 2-1. 소득세, 가족수당, 주거수당, 사회최소수당의 재분배 효과

자녀 양육 관련 조세감면, 가족수당 및 각종 사회 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의 생활수준 차이를 자녀수 및 부모 유형(양부모/한부모)에 따라 분석한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에서 가족 수당과 조세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 정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분히 사회 정책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 정책은 소득이 높은 가족과 소득이 낮은 가족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수직적 재분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없는 가정과 자녀가 있는 가정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가족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 역시 수행하고 있다.

수평적인 재분배 측면에서 세 자녀가 있는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당과는 달리 사회최소수당과 주거수당은 자녀가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동 지표 분석은 사회보장부 조사연구평가통계국(DREES)의 "Enquête, Revenus fiscaux et sociaux"(세제감면 혜택 및 사회수당 수급액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3-3〉 조세부과 및 사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의 소득 수준 차이

	최초 생활 수준 ¹⁾ (%,유로)	조세 부과 효과			조세부과 이후 생활수준 (%,유로)	수당 효과		수당 지원 이후 생활수준 (%,유로)	목적	
		소득세 부과		주거세 부과 이후		가족수당 효과	주거수당, 최소 사회수당, 활동연대수당 효과			
		quotient familial 적용 전	quotient familial 적용 후							
부부 가족										
무자녀	100	-4.0%	0.3%	-1.3%	95.0	0.0%	0.4%	95.2	생활 수준의 격차 감소	
	26,230				24,908			24,977		
1자녀	84.3	-3.9%	1.6%	-0.7%	81.7	5.8%	0.1%	86.8		
	22,107				21,426			22,760		
2자녀이상	76.0	-3.9%	2.9%	-1.0%	74.4	9.1%	0.2%	81.3		
	19,942				19,524			21,320		
3자녀이상	51.3	-2.6%	3.5%	-0.2%	51.6	24.5%	1.0%	65.0		
	13,452				13,541			17,055		
독신자										
무자녀	100	-3.1%	0.1%	-2.1%	95.0	0.0%	1.8%	97.2		생활 수준의 격차 감소
	18,986				18,040			18,462		
1자녀	68.2	-3.0%	3.1%	-0.9%	67.6	5.0%	10.6%	77.5		
	12,948				12,836			14,705		
2자녀이상	44.2	-1.2%	1.8%	0.6%	44.8	32.4%	17.3%	69.2		
	8,395				8,497			13,142		

주: 1)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원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2) "quotient familial"은 가족원이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여 "동등한 식구수"로 나누어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한다. "동등한 식구수"는 성인 1명, 두번째 자녀까지는 0.5명, 세번째 자녀부터는 다시 1명으로 간주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낮게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청(2013) 2013 Projec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 Annexe 1. Programmes de qualité et d'efficience Famille

〈표 3-4〉 조세부과 및 사회수당 지원 이전과 이후 소득 수준의 계층 간 격차

가족 유형		생활 수준 (유로)		사회정책 효과 (%)				무자녀 가정과 비교한 생활수준(%)	
		최초	최종	조세 부과	가족 수당	활동연대 수당	주거수당 최소사회수당	최초	최종
부부	무자녀	25,190	24,160	-4.7	0.0	0.0	0.6	100	100
	1자녀	21,390	22,200	-2.5	6.3	0.0	0.1	85	92
	2자녀	19,450	20,810	-1.9	8.8	0.0	0.3	77	86
	3자녀이상	13,460	16,810	0.3	23.0	0.0	1.3	53	70
독신자	무자녀	18,600	18,100	-5.0	0.0	0.0	2.4	100	100
	1자녀	12,200	14,000	-0.1	3.7	0.8	10.8	66	77
	2자녀이상	8,150	12,560	0.8	31.2	0.1	16.6	44	69

주: 1)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의 원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 2)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두자녀 부부 가정의 경우 세전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전 평균 생활 수준은 월 19,450 유로이다. 이들의 소득은 조세 부과와 함께 1.9% 하락한다. 조세부과 후의 소득은 가족 수당 급여 지급과 함께 8.8% 상승한다. 이들 부부는 활동 연대 수당을 받지 않는다. 주거수당 혹은 최소사회수당을 받은 후에 이들의 소득은 0.3% 상승한다. 무자녀 가족의 소득과 비교하여 자녀가 2명 있는 부부 가족의 소득은 조세 감면과 수당 혜택을 받기 전에는 무자녀 부부의 소득의 77%였다. 하지만 조세 감면과 가족 수당 지급 후 자녀가 2명 있는 부부 가족의 소득은 무자녀 부부 소득의 86%로 상승한다.

자료: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études et résultats, n.788

가족 정책 지원 이전과 이후 생활 수준의 변화를 소득 수준별로 그리고 정책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소득세 부과와 가족수당 지원 후에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가 좁혀졌다. 생활 수준의 격차 감소 폭은 부부 가구보다 한부모 가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자녀 가정 보다 다자녀 가정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조세 감면 및 수당 지원 이후 생활 수준의 소득 수준별 격차

	부부 가구			한부모 가구		목적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1자녀	2자녀 이상	
최초 생활 수준	3.6	4.1	7.5	15.8	169.1	생활수준의 격차 감소
소득세 부과 이후 (부양가족공제없음)	3.4	3.7	6.7	14.7	158.0	
소득세 부과 이후 (부양가족공제)	3.5	3.9	7.2	15.3	168.3	
주거세 부과 이후	3.4	3.8	6.9	15.0	173.5	
가족 수당 지원 이후	3.3	3.4	4.2	9.1	4.4	
활동연대수당지원 이후	3.3	3.4	4.2	8.9	4.4	
최소사회수당 및 주거수당 지원 이후	3.1	3.1	3.6	2.8	2.5	

주: 1)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2) 표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 가구 중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는 초기 생활비 수준(Niveau de vie)이 소득 하위 10% 가족에 비해 4.1배 높다. 부양가족공제를 포함한 소득세 부과 이후 소득 격차는 3.9배로 낮아지며, 가족수당, 최소사회수당, 주거수당 지원 이후 소득 격차는 3.1배로 더욱 낮아진다.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청(2013) 2013 Projec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 Annexe 1. Programmes de qualité et d'efficience Famille

프랑스 사회보건부 조사·연구·평가·통계국(DREES)은 "Enquê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영유아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표를 중심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DREES의 월간지인 "études and résultats"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DREES 연구 결과 중에서 본 연구가 참고할 만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가족 정책 성과 평가 보고서는 DREES가 "études and résultats"에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영유아 보육 정책 평가 지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가 영유아 보육 정책 평가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 보육 서비스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 수준별
- 가족 유형별 평균 보육비 지출액

70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 보육 정책 변화 이후 보육비 지출액 변화 및 소득 수준별 보육 서비스 이용 변화

보육 서비스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분석 결과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표 3-6〉 자녀 보육 유형별 월 평균 보육비 지출액 (2007)

(단위: 유로, 2007년 기준)

	구분	총 보육비	주된 보육비 ¹⁾	수당액	조세 공제액	수당 및 조세 공제 후 보육비	보육 이용 시간	시간 당 보육비 (공제전)	시간당 보육비 (공제후)	
전체	인가된 보육사 ²⁾	515	508	244	77	187	166	3.1	1.1	
	어린이집	280	269	0	86	183	169	1.6	1.1	
	인가되지 않은 보육사	389	387	0	0	387	167	2.3	2.3	
	가정내 보육사 ³⁾	1,257	1,203	131	437	635	187	6.4	3.4	
	가정내 보육사(공동 고용)	1,023	1,018	169	425	424	209	4.9	2.0	
	합계	464	455	153	97	205	168	2.7	1.2	
인가된 보육사	생활 수준 ⁴⁾	1,100유로 이하	472	460	283	61	116	158	2.9	0.7
		1,100~1,700 유로	475	472	265	69	138	160	2.9	0.9
		1,700~2,300 유로	520	517	249	82	186	164	3.1	1.1
		2,300유로 이상	620	601	164	94	343	185	3.2	1.9
	지역	18명 이상	653	644	240	90	314	179	3.6	1.8
		19~40명	507	501	243	78	180	166	3.0	1.1
	41명 이상	477	471	246	71	154	162	2.9	0.9	
어린이집	생활 수준 ⁴⁾	1,100유로 이하	179	166	0	64	102	163	1.0	0.6
		1,100~1,700 유로	256	251	0	88	163	173	1.4	0.9
		1,700~2,300 유로	314	298	0	94	204	166	1.8	1.2
		2,300유로 이상	408	393	0	95	298	169	2.3	1.8

- 주: 1) 3세 미만 학령전 아동의 주된 보육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지출한 월 평균 보육비로서 보육료 외 지출한 식비와 양육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임.
 2) 부모가 인가된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기관에 소속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출액은 포함하지 않음
 3) 가정 내 보육사를 부모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출액을 포함함.
 4)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소비 1단위당 월평균 생활수준(Niveau de vie)이다.

자료: DRES(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études et résultats no.695

〈표 3-6〉에서 보면 수당 지원액과 조세 감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인가된 보육사에 지출하는 월 비용은 515유로로서 어린이집에 지출하는 월 비용 280유로보다 두 배 가량 높지만, 수당 지원액과 조세 감면액을 제외한 후에는 두 서비스에 대한 지출 비용은 각각 187유로와 183유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 소비 1단위 당 월평균 생활 수준이 2,300유로 이상인 고소득층(408유로)이 소비 1단위 당 월 평균 생활 수준 1,100유로 이하인 저소득층(179유로)에 비해 약 2배 가량 더 높은 시설 보육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감안한 후 모든 소득 계층에서 보육료 부담 수준은 감소하지만 저소득층(43% 감소)이 고소득층(27% 감소)에 비하여 약 3배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된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수당과 조세 감면 혜택을 통해 모든 계층에서 보육료 부담 수준이 감소하지만, 시간당 보육비 감면 정도는 저소득계층에서 75.9%가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40.6% 감소하여 보육비 감면 정도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 이후 시간당 보육비도 저소득층 0.7 유로에서 고소득층 1.9유로로 소득 수준별로 액수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소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7〉 참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체 소득에서 시설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당과 조세 감면 지원 이후 보육료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득 계층에서 5~7%로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이전에 인가된 보육사에 대한 보육료 지출 비중이 시설 보육료 비중보다 높으나 정부 지원 이후 두 종류의 보육 서비스 지출 비중은 비슷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정도와 인가된 보육사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이 비슷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2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표 3-7〉 전체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 수준별 (2007)

생활 수준 ¹⁾	주된 보육 방식							
	인가된 보육사		시설 보육		가정 내 보육 (단독)		가정 내 보육 (공유)	
	지원 이전	지원 이후	지원 이전	지원 이후	지원 이전	지원 이후	지원 이전	지원 이후
1,100 유로 이하	27	6	11	7	-	-	-	-
1,100~1,700 유로	17	5	9	6	-	-	-	-
1,700~2,300 유로	14	5	8	5	-	-	-	-
2,300 유로 이상	11	6	7	5	14	8	19	8
합계	14	5	8	6	17	9	19	8

주: 1)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소비 1단위당 월평균 생활수준(Niveau de vie)이다.

자료: DREES(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études et résultats no.695

가족 유형별 평균 보육비 지출액 분석 결과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표 3-8〉 참고).

〈표 3-8〉 가족 유형별 평균 보육비 지출액

	월평균 지출액 (수당 및 조세 감면 전)	월평균 지출액 (수당 및 조세 감면 후)	월평균 이용시간	시간당 비용 (수당 및 조세 감면 전)	시간당 비용 (수당 및 조세 감면 후)
생활 수준 ¹⁾					
1,100 유로 이하	314	114	161	1.9	0.7
1,100~ 1,700	408	157	165	2.5	1.0
1,700~ 2,300	462	205	165	2.8	1.2
2,300 유로 이상	674	387	165	3.6	2.1
6세 미만 자녀수					
1명	466	210	171	2.7	1.2
2명	475	218	165	2.9	1.3
출생 순위					
첫째	467	213	172	2.7	1.2
둘째	470	211	167	2.8	1.3

주: 1)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소비 1단위당 월평균 생활수준(Niveau de vie)이다.

2) 3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서 주된 보육 방식으로서 돈을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자료: DREES(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études et résultats no.695

보육 서비스의 시간당 비용은 가족 수당과 조세 감면 이후 월평균 생활 수준 1,100유로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 63%가 감소하여 월평균 생활 수준 2,300유로 이상의 고소득 가구가 41.7% 감소한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지출하는 아동 1명당 시간 비용은 6세 미만 자녀가 몇 명이든 혹은 출생 순위가 어떻든지 간에 1.2~1.3유로로 거의 유사한 액수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004년 영아보육수당(PAJE)을 도입하면서 인가된 보육사 이용에 대한 수당 지원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가정 내 보육사 이용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산층 가정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보육 정책에서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보육 정책 변화 이후 보육비 지출액 및 소득 수준별 보육 서비스 이용 비중에 나타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9〉참고).

첫째, 인가된 보육사에 대한 시간당 비용은 수당과 조세 감면 이후 실질 유로 가격으로 3.7%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시간당 비용 감소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 강화에 따라 보육 시설 이용 비용은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집단에서 비용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 보육사 이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는 자녀 보육에 대한 보육료 비용 부담을 절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고 되지 않는 부모의 취업 활동을 공식화하는데 기여하고, 또한 비용을 지불하는 공식적인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4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표 3-9〉 보육 정책 변화 이후 보육비 지출액 (2002~2007)

	주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	수당액	조세 감면액	수당과 조세 감면 이후 보육비 지출	월평균 이용시간	시간당 보육비 지출액 (수당 및 조세 감면 이전)	시간당 보육비 지출액 (수당 및 조세 감면 이후)	
2002년(2007년 유료)								
인가된 보육사	437	156	43	238	171	2.6	1.4	
시설 보육	282	0	35	247	171	1.6	1.4	
비인가 보육사	340	0	0	340	182	1.9	1.9	
가정내 보육(단독)	1,016	0	223	793	179	5.7	4.4	
전체	401	84	46	271	173	2.3	1.6	
2007년 (유료)								
인가된 보육사	508	244	77	187	166	3.1	1.1	
시설 보육	269	0	86	183	169	1.6	1.1	
비인가 보육사	387	0	0	387	167	2.3	2.3	
가정내 보육(단독)	1,203	131	437	635	187	6.4	3.4	
전체	455	153	97	205	168	2.7	1.2	
지출변화율(2002~2007)								
인가된 보육사	2.8	8.6	11.2	-4.3	-0.6	3.4	-3.7	
시설 보육	-0.8	0.0	18.4	-5.4	-0.3	-0.5	-5.1	
비인가 보육사	2.4	0.0	0.0	2.4	-1.7	4.2	4.2	
가정내 보육(단독)	3.2	/	13.3	-4.0	0.9	2.3	-4.9	
전체	2.4	11.6	14.9	-5.0	-0.5	2.8	-4.5	
인가된 보육사 ¹⁾								
생활수준 ²⁾	1,100유로 이하	2.2	6.3	>50	-10.1	-1.6	3.8	-8.6
	1,100~1,700 유로	2.3	9.2	13.3	-8.1	-0.9	3.2	-7.3
	1,700~2,300 유로	3.6	10.4	9.3	-4.0	-0.3	3.8	-3.7
	2,300 유로 이상	3.6	2.0	9.8	3.0	0.2	3.4	2.8
시설 보육 ¹⁾								
생활수준 ²⁾	1,100유로 이하	3.8	0.0	-50	-4.9	-0.5	4.3	-4.4
	1,100~1,700 유로	-1.2	0.0	21.6	-6.8	0.8	-2.0	-7.5
	1,700~2,300 유로	-2.7	0.0	11.4	-6.5	-0.7	-2.0	-5.8
	2,300 유로 이상	0.0	0.0	10.3	-2.2	-1.7	1.8	-0.5

주: 1) 2002년~2007년 보육료 지출 변화율

- 2) 프랑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계산함에 있어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의 소비 단위(가구의 첫번째 성인에게 1, 14세 이상의 추가적인 성인에게 0.5, 14세 미만 아동에게 0.3을 부여하여 합한 숫자)로 나눈 "생활 수준(Niveau de vie)"을 적용한다. 표에서 제시된 금액은 소비 1단위당 월평균 생활수준(Niveau de vie)이다.

자료: DREES(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études et résultats no.695

제2절 OECD Family Database 지표

OECD Family database는 유럽 국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 국가의 현황과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각 회원국들의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OECD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의 일환으로서 각 국가의 모성 휴가 정책과 휴가 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Family database에 포함된 모성 휴가 관련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모성 휴가 정책의 변화가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는 OECD Family database 대분류 중의 하나인 "PF: 가족과 아동 정책" 중 "PF2.1: 모성 휴가 제도의 주요 특징" 과 "PF2.4: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에 해당되는 표와 도표 자료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Table PF2.1A: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특성
- Chart PF2.1A: 임금이 100%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휴가 기간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
- Chart PF2.4C: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 Chart PF2.4E: 육아휴직기간 동안 두자녀 맞벌이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OECD Family database에 보고되어 있는 동 지표들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주요 시사점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PF2.1A"에 나

타난 OECD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가장 길게 (156주, 3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페인이다. 양성 평등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덴마크 32주, 노르웨이 88주, 스웨덴 60주 등 휴가 기간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앵글로 색슨 국가의 경우 호주 52주, 캐나다 37주, 뉴질랜드 52주, 영국 13주 등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육아 휴직을 부여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스웨덴 64.3%, 노르웨이 32.7%, 덴마크 53.4%, 핀란드 21.0%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8.8%, 독일은 22.3%로 전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지 않다.

〈표 3-10〉 OECD 주요 국가의 육아 휴직 특성 (2011/2012): Table PF2.1A

	총 육아휴직기간 (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임금 100% 급여 지원 가정시 휴가기간 (주)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기간(주)
호주	52.0	0.0	0.0	52.0
오스트리아	104.0	40.0	41.6	84.7
벨기에	12.0	91.7	11.0	10.2
캐나다	37.0	52.0	19.3	15.8
체코	156.0	25.3	39.4	87.4
덴마크	32.0	53.4	17.1	22.8
에스토니아	156.0	51.2	79.9	70.6
핀란드	156.0	21.0	32.8	119.7
프랑스	156.0	18.9	29.5	118.2
독일	156.0	22.3	34.8	107.4
그리스	14.0	0.0	0.0	30.3
헝가리	156.0	51.0	79.6	76.7
아이슬란드	26.0	32.3	8.4	15.6
아일랜드	14.0	0.0	0.0	14.0
이탈리아	24.0	30.0	7.2	18.2
일본	52.0	50.0	26.0	12.8
라트비아	52.0	70.0	36.4	15.6
리투아니아	156.0	36.7	57.2	15.7
룩셈부르크	24.0	42.9	10.3	13.9

〈표 3-10〉 계속

	총 육아휴직기간 (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임금 100% 급여 지원 가정시 휴가기간 (주)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기간(주)
네덜란드	26.0	18.8	4.9	20.7
뉴질랜드	52.0	0.0	0.0	38.0
노르웨이	88.0	32.7	28.8	59.4
폴란드	156.0	12.4	19.4	134.9
포르투갈	9.0	100.0	9.0	13.0
슬로바키아	136.0	22.6	30.7	105.3
슬로베니아	37.0	100.0	37.0	0.0
스페인	156.0	0.0	0.0	144.0
스웨덴	60.0	64.3	38.6	20.6
터키	26.0	0.0	0.0	26.0
영국	13.0	0.0	0.0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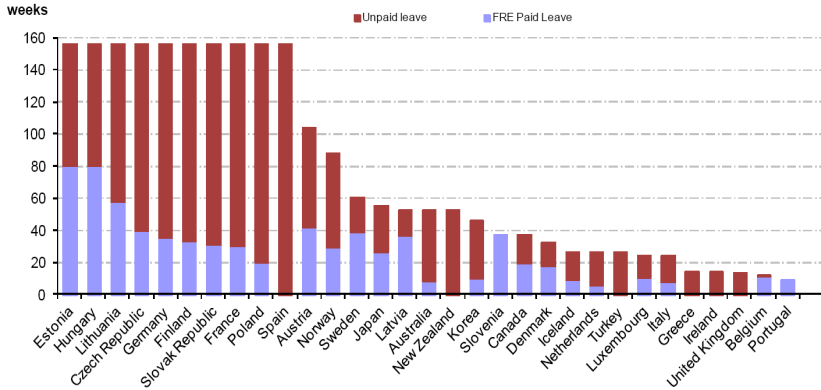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임금이 100%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육아휴직 기간은 덴마크 17.1주, 핀란드 32.8주, 노르웨이 28.8주, 스웨덴 38.6주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3년으로 길지만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임금이 100% 지원된다고 가정할 경우 휴직 기간은 프랑스 29.5주, 독일 34.8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육아 휴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는 휴가 기간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 기간을 분석한 "Chart PF2.1A"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156주로서 긴 편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각각 118.2주와 107.4주로서 전체 휴직 기간의 약 75%와 69%를 차지한다. 핀란드 역시 총 육아휴직기간 156주 중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 119.7주로서 전체 육아휴직기간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에 스웨덴은 전체 육아휴직기간 60주 중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은 20.6주로서 전체 휴직기간의 34%만을 차지한다.

[그림 3-1] OECD 주요 국가의 육아 휴직급여 특징 (2011/2012): Chart PF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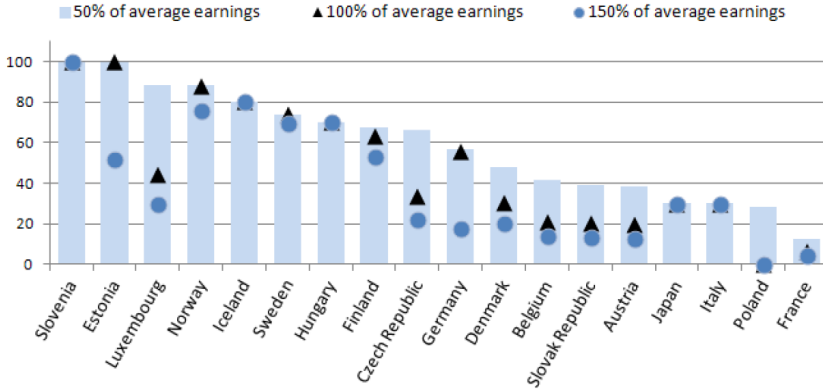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Chart PF2.4C) 현황을 OECD 주요 국가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는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 50%와 평균 소득 100% 수준에서 모두 88%로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평균 소득 150%의 경우 76%로서 낮은 소득 집단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높은 편이다. 스웨덴 역시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 50%와 평균 소득 100% 수준에서 모두 74%로서 높은 수준이며, 평균 소득 150%의 경우 70%로서 낮은 소득 집단과 별다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덴마크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소득 50%에서 48%, 평균 소득 100%에서 31%, 평균 소득 150%에서 20%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소득 50%에서 12%, 평균 소득 100%에서 6%, 평균 소득 150%에서 4%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3-2]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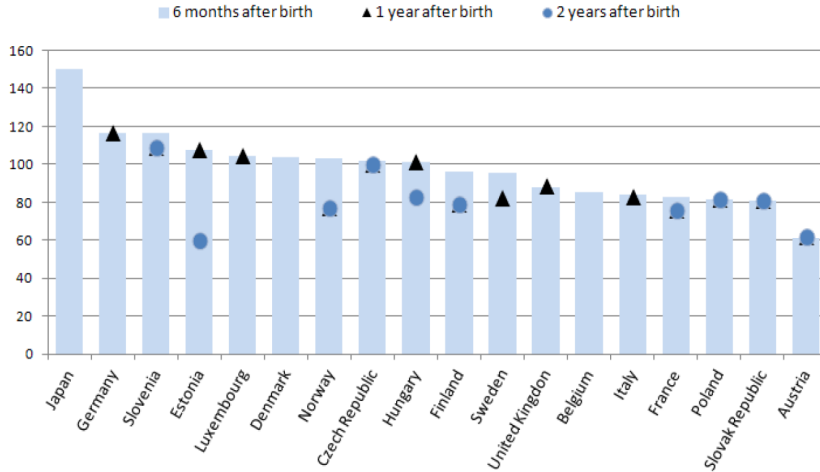
육아휴직기간 동안 두자녀 맞벌이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OECD 주요 국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 동등화 소득(Net equivalised income)이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세를 지불하고 난 후 받게 되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다 이러한 순 동등화 소득을 자녀 출산 6개월 후 시점, 1년 후 시점, 2년 후 시점에서 파악하였다. 분석 대상 가구는 두 자녀가 있는 동일한 임금 수준의 맞벌이 부부로서 각각의 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의 50%, 100%, 150%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자녀 출산 6개월 시점에서 두 번째 자녀 출산 후의 순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에 가까운 국가는 일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에 따라서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출산 후 각 시점에서 별다른 차이 없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출산 후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국가도 있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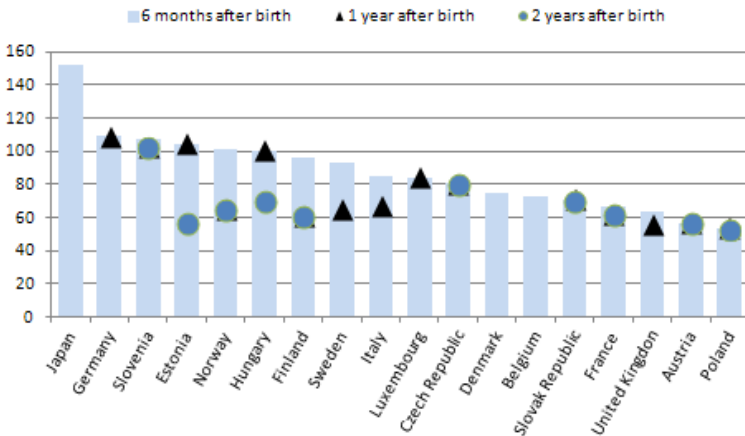
80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림 3-3]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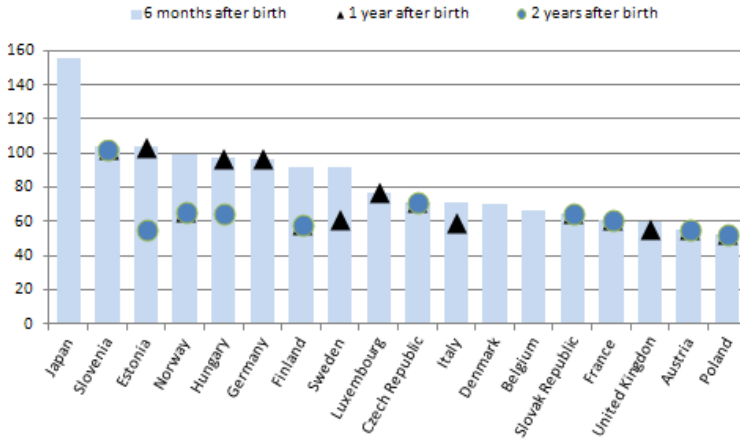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그림 3-4]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10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그림 3-5] OECD 주요 국가의 자녀 출산 후 동등화 소득이 출산 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 소득 150%에 해당하는 가구 (2008)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oecdfamilydatabase.htm>) 2013년 7월 1일 방문



제4장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방법론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결과

4

국내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평가 분석

제1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방법론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현금 지원 정책,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 육아 휴직 지원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감면 정도를 <표 4-1>과 같이 선정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목적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추진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는 바, 이러한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 지원 정책, 서비스 지원 정책, 육아 휴직 지원 정책 각각에 대해 선정한 평가 지표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과 지출 측면에서 얼마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감면해 주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현금 지원으로 받은 액수가 얼마이며 이러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얼마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정부 지원으로 인하여 각 가구의 자녀 보육교육비 지출이 얼마만큼 감소 되었으며 소득에서 보육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만큼 감소하였는가, 육아 휴직 급여가 출산 전에 받던 소득을 얼마만큼 대체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표 4-1〉 본 연구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지표

정책 구분	지표명
현금 지원	지표 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지표 2: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육 지원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휴가 지원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 총 육아휴직기간 ·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직 기간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지표 7: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본 연구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이 0~5세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전체 가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득 계층 그리고 자녀수에 따라 얼마만큼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여 계층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기준 시점 2005년)부터 구축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패널 조사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하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가구에서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의 경제상태 뿐만 아니라 아동 및 가족 현황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각 가정이 지원 받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용한 함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미곤 외, 2010). 특히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

인 2006년 이후부터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어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가구 경제 및 복지 상태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금 지원 정책과 서비스 지원 정책 지표에 대해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육아휴직 정책 지표에 대해서는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를 활용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과 서비스 지원 정책 지표에 대해서 3차년도 자료(2007년 기준 자료)부터 활용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자녀 교육비 지출 자료를 3차년도 조사부터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육아휴직 정책 분석은 급여 확대에 따른 소득대체율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월 40만원으로 확대된 2006년부터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패널은 2009년부터만 연간총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2006년도의 소득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자료를 사용하여 2008년도 연간총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물가변동을 조정하여 2006년도 평균월소득액으로 사용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지원 정책의 지표 분석을 위한 소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 두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상소득은 세전소득으로서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은 세후소득으로서 경상소득에 사회보장 부담금과 소득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이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User's Guide, 각 연도). 경상소득은 분석 대상 가구를 5분위 소득 수준별로 구분하기 위해 활용하였으며, 가처분 소득은 소득에서 정부 지원금 그리고 보육교육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정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육아 휴직 정책 지표와 관련한 소득 자료는 OECD Family database에서의 정의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데이터베이스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는 OECD Tax-Benefit model 방법론에 따라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추정을 위한 소득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C-K 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을 소득 자료로 삼았다¹⁰⁾.

소득 수준이나 0~5세 영유아 자녀수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각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 동등화 소득으로 환산하였다.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현금 수당 액수는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나누어 영유아 자녀 1인당 액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연도별로 동일한 비교를 하기 위하여 소득을 비롯한 모든 금액은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현금 지원 정책과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책 지원에 따른 부담 감면 정도를 계층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수준 및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분석하였다. 소득 집단별 분석을 위하여 가구 동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5분위 집단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가정이 양육하는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¹¹⁾

10) C-K에 포함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 C-mining, quarrying (광업, 채석업), D-manufacturing (제조업), E-electricity, gas, water supply (전기, 가스, 상수도 공급업), F-construction (건설업), G- whole-sale, retail (도소매업), H-hotel, restaurant (숙박 및 음식업), I-transport, communication (운송 및 통신업), J-financial (재정), K-real estate, business (부동산, 사업)

11) 0~5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샘플 수가 10가구 내외로 매우 적어 자

육아 휴직 정책과 관련해서는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소득 계층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C-K 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50%, 100%, 15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 방법론

가. 현금 지원 정책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지표는 0~5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 받는 전체 현금 지원 액수 (지표 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와 이러한 현금 지원금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지표 2: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감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금 지원 액수와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면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에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과 현금 수당 지원 액수를 포함시켰다. 조세 절감액은 세전 소득에서 0~5세 자녀와 관련한 소득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 세후 소득의 증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후 소득의 증가분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받게 되는 조세 감면상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자료에 기초하여 0~5세 자녀 양육에 따른 조세 감면 액수를 추계 하였다. 조세 감면 액수는 자녀 부양에 대한 인적 공제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너 수 2명 이상의 가구로 합하여 분석하였다. 가구에 따라서는 0~5세 자녀 이외에 더 높은 연령의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0~5세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만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특별 공제로 구분하여 추계하였다. 자녀에 대한 조세 절감액에 인적 공제와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을 모두 포함시켜 현금 수당 지원액과 함께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액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조세시뮬레이션 방법론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영유아 가구가 지원받고 있는 현금 수당은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포함된 수당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 공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한 “기타 정부 보조금” 항목 중 각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당이라고 판단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였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수당으로서 2007년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부모자가정수당, 가정 위탁금, 학비 지원이 포함되었다. 2009년도에는 2007년도와 비교 시 바우처 지원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추가되었다. 2009년 7월부터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양육수당은 2009년도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1년도에는 2009년도와 비교 시 양육수당과 급식비 지원이 추가되었으며,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와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가 포함되었다¹²⁾. 바우처로 지원되는 항목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현금 수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정부의 바우처 지원은 해당되는 항목의 소비 지출에 대하여 각 가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바우처 지원을 통해 각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바우처 지원을 현금 수당 항목에 포함시켰다.

수당 지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책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 지원이

12) 한국복지패널은 2012년 “기타 정부보조금” 항목에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지출을 전제로 하는 바우처와 현금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도에 “바우처 지원금”에 해당하던 내용들의 일부가 2012년부터 각각 해당되는 지원 항목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수당으로서 고령자, 국가 유공자, 농어민, 긴급 복지 지원자 등에 대한 수당 지원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당 정책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 혹은 양육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상당 규모의 양육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자녀 양육 관련 수당은 실제로 각 가정이 지원받고 있는 수당 액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표 4-2〉 본 연구에 포함된 수당 지원 정책

	2007	2009	2011
자녀 양육 관련 수당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부·모자가정수당, 가정위탁금, 학비지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부·모자가정수당, 가정위탁금, 학비지원,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학비지원,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양육수당, 급식비 지원
기타 수당	기타 보조금	기타 보조금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 감면 또는 보조, 기타 보조금
제외한 수당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비,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유류환급금, 긴급복지지원금, 한시생계비	기초노령연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나.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 지표는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지표 3)과 이러한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지표 4)이다. 동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가정이 0~5세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 정부로부터 받은 보육교육비 지원액, 가구가 지출한 보육교육비에 대해 특별 공제로서 환급받은 조세 감면액을 산출 하였다.

실제 지출 비용은 시설 이용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육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가구가 0~5세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의 총액이다.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이다.

실제 지출 비용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기준에 따라 0~5세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민간 학원 및 사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친인척, 이웃, 민간 베이비시터 등 개인 양육 등에 지불하는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출 비용에는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시설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본인 부담금과 함께 교재비, 도구 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된다(한국복지패널 조사지침서, 각연도). 따라서 이러한 실제 지출 비용은 각 가구가 0~5세 영유아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액수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의 정의에 따라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을 이용할 때 i-사랑 카드 혹은 아이즐거움카드로 지불하는 정부 지원 바우처 비용으로 정의하였다(한국복지패널 조사지침서). 보육교육비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 액수는 앞서 현금 지원에서 추계한 조세 감면액 중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감면액과 동일한 내용이다(부록 1) 참고).

본 연구는 가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액을 합한 것을 영유아 1명당 보육교육에 총 “투자”되는 비용으로 보았다.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에서는 실제 지출비용,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액, 그리고 이 두 비용을 합한 영유아 1인

당 총 보육교육비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정의한 “총 보육교육비용”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가구가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총 보육교육 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을 제외하고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까지 제외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가구가 부담하는 “순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보았다.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정부 지원에 따른 가구의 보육교육비 부담 감면 정도를 파악하였다(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 육아휴직지원 정책

육아휴직급여는 2006년 월 40만원에서 2009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되고, 2011년 정액제에서 정률제인 통상 급여의 40%(하한액 월 50만원, 상한액 월 100만원)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육아 휴직 지원 정책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정액제의 지원 금액 인상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제도가 변경된 시점을 관통하여 육아휴직 이용 가정의 소득 보전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 확대가 가구의 소득 보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표들은 OECD Family database의 “PF2.1: 육아휴직정책의 주요 특징”, “PF2.4: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에서의 주요 지표이다. OECD Family database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관련 지표 산정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자료를 생산하여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였다(구체적인 방법론은

〈부록 2〉 참고).

첫 번째 지표는 "지표5: 육아휴직 관련 기본 지표"로서 총 육아휴직기간(주),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서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의 휴직기간, 휴직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 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포함된다. 2006년과 2009년은 육아휴직급여가 각각 40만원과 50만원 정액제로 지급되었다. 이에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평균 월급여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원하되 하한선 50만원과 상한선 1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되었다. 따라서 2011년도 소득대체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에 따라 추계했다. 1안은 하한선과 상한선을 무시하고 전체 여성에 대해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2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위 하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2011년 제도 변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육아휴직 급여액 가운데 매월 총 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의 본래의 목적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다고 가정하여, 15퍼센트를 매월 급여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지표는 "지표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로서 평균 소득의 50%, 100%, 15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녀 출생 이전의 소득과 출생 6개월 이후 시점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비교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구하였다. 기본적인 가정으로 전일제 부부가 두 자녀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벌고 있다고 보았다. 임금 자료는 OECD Tax-Benefit model 방법론에 따라 C-K 산

업이 포괄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연도의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임금 수준을 추계하였다.

세 번째 지표는 "지표7: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의 동등화 소득"이다. 동등화 소득이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받는 육아휴직급여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소득세, 지방세를 지불하고 난 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다. 자녀 출생 6개월 후, 자녀 출생 1년 후, 자녀 출생 2년 후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출산 전 소득과 비교하여 출산 후의 동등화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소득 수준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평균 소득의 50%, 100%, 150% 소득 집단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본 지표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엄마가 출산 직후 출산후 휴가 3개월을 사용하고 연이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다. 따라서 출산 후 6개월 시점은 육아휴직 3개월 시점이며, 출산 후 1년은 육아휴직 9개월 시점이다. 출산 후 2년은 육아휴직에서 직장으로 복귀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출산 후 6개월 시점부터 출산 후 1년 시점까지 육아휴직급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3. 표본의 특성

가. 현금 지원 및 보육 지원

현금 지원 및 보육 지원 정책 분석에 활용한 한국복지패널 샘플의 규모와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구는 0~5세 연령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로서 경상소득이 0원 이상인 가구이다¹³⁾.

13) 경상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2007년도 샘플 중에서 2가구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 가구는 샘플에서 제외하였다.

96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0~5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7년 902가구, 2009년 825가구, 2011년 706 가구로서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표본 중 현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구 수는 2007년 241가구(전체의 26.7%), 2009년 257가구(전체의 31.2%), 2011년 279가구(전체의 39.5%)로 연도별로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는 2007년 338가구(전체의 37.5%), 2009년 420가구(전체의 50.9%), 2011년 390가구(전체의 55.2%)로 현금 수당 지급 가구에서 보인 것과 유사하게 수급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본 분석에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샘플 가구 수

(단위: 가구수, %)

구분	2007		2009		2011	
	가구	비율	가구	비율	가구	비율
0~5세 영유아 자녀 가구수	902	100.0	825	100.0	706	100.0
0~5세 자녀 1명	660	73.2	615	74.5	541	76.6
0~5세 자녀 2명	234	25.9	199	24.1	154	21.8
0~5세 자녀 3명	8	0.9	10	1.2	10	1.4
보육료 수급 가구 수	338	37.5	420	50.9	390	55.2
수당 수급 가구 수	241	26.7	257	31.2	279	39.5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8	0.9	9	1.1	6	0.8
한부모가족지원	3	0.3	3	0.4	5	0.7
가정위탁금/소년소녀가장보호비	2	0.2	2	0.2	2	0.3
양육수당	-	-	-	-	49	6.9
학비지원	13	1.4	11	1.3	25	3.5
기타 바우처 지원금	-	-	133	16.1	120	17.0
근로장려세제	-	-	26	3.2	25	3.5
급식비 지원	-	-	-	-	33	4.7
에너지 감면/보조	-	-	-	-	112	15.9
통신 감면/보조	-	-	-	-	59	8.4
기타 보조금	239	26.5	146	17.7	104	14.7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현금 수당 항목별로 보면 현금성 지원보다 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 지원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약 1% 내외로 나타난 반면에, 기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구 비중은 2007년 26.5%, 2009년 17.7%, 2011년 14.7%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에 도입한 바우처 지원금 수급 비중도 2009년 16.1%, 2011년 17%로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까지 양육수당은 차상위 계층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었으며 2011년도 복지패널 샘플 중에서 양육수당 수급자 비중은 약 7%로 나타났다.

〈표 4-4〉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은 연간 보육료 지원액과 연간 현금 지원액의 연도별 추이이다.

〈표 4-4〉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보육료 지원액과 현금 지원액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7			2009			2011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보육료지원액수	236.88	9.97	1,209.28	273.46	10.30	971.90	304.32	37.50	886.54
수당지원액수	88.80	4.43	931.32	82.18	1.03	998.67	132.31	2.88	1,334.62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144.35	29.90	425.24	173.59	37.06	395.35	123.76	34.62	208.65
한부모가족지원	65.42	39.87	91.91	89.67	46.33	135.90	133.72	57.69	173.08
가정위탁금/소년 신규장보호비	43.19	43.19	43.19	111.19	111.19	111.19	115.38	115.38	115.38
양육수당	-	-	-	-	-	-	154.21	19.23	534.62
학비지원	292.12	19.93	620.14	89.90	18.53	370.64	156.26	6.73	644.23
기타 바우처 지원금	-	-	-	43.33	2.06	728.93	69.89	3.85	869.23
근로장려세제	-	-	-	82.88	9.27	123.55	100.19	19.23	115.38
급식비 지원	-	-	-	-	-	-	74.24	19.23	253.85
에너지감면 /보조	-	-	-	-	-	-	12.83	2.88	44.23
통신 감면/보조	-	-	-	-	-	-	27.99	0.96	110.58
기타 보조금	68.14	2.21	522.69	70.36	1.03	590.97	73.36	0.96	329.81

주: 1) 보육료 및 수당 지원 액수는 지원을 받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평균을 구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연간 총액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연도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금액은 2010년 실질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각 가정이 지원 받는 보육료 액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은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연간 금액은 2007년 237만원, 2009년 273만원, 2011년 304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간 지원 받은 평균 현금 수당 액수는 2007년 89만원, 2009년 82만원, 2011년 132만원이다. 2011년도에 가구가 지원 받은 평균 현금 수당 액수가 증가한 이유는 과거 연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육 수당이 추가되었고 다른 항목의 급여 액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대상인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소득 5분위별 연간 가구동등화소득의 평균을 전체 복지패널샘플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본 연구 대상 샘플의 평균 소득액이 전체 복지패널 샘플의 평균 소득액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샘플을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독거 노인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1~2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 동등화 소득이 전체 복지 패널 샘플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 대상 샘플의 소득 4분위와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동등화소득 수준은 전체 복지패널 표본의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동등화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 대상의 소득 4~5분위에 해당하는 계층은 전체 복지패널 표본의 소득 4~5분위 계층과 유사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0~5세 영유아 자녀수별 연간 가구동등화소득의 평균액을 보면 영유아 자녀 1명 가구는 소득 4분위, 영유아 자녀 2명 가구는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 및 전체 복지 패널 샘플의 가구의 동등화 소득 현황

(단위: 만원)

구분	2007			2009			2011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평균	최소값	최대값	
0~5세 영유아 가구	1분위	1,166	201	1,590	1,272	183	1,689	1,377	229	1,784
	2분위	1,810	1,591	2,064	1,919	1,698	2,171	2,067	1,788	2,295
	3분위	2,352	2,066	2,669	2,411	2,174	2,690	2,502	2,296	2,717
	4분위	3,134	2,669	3,622	3,036	2,690	3,468	3,107	2,723	3,800
	5분위	5,447	3,629	36,158	4,856	3,474	20,120	5,200	3,807	21,548
	1자녀	2,909	201	36,158	2,699	183	9,291	2,935	229	21,548
	2자녀 이상	2,443	271	17,372	2,706	794	20,120	2,591	485	7,102
전체 복지 패널 샘플	1분위	653	0	1,017	759	0	1,126	792	0	1,190
	2분위	1,374	1,018	1,717	1,490	1,127	1,824	1,572	1,191	1,930
	3분위	2,075	1,718	2,440	2,161	1,824	2,528	2,265	1,930	2,614
	4분위	2,926	2,440	3,538	2,998	2,531	3,560	3,062	2,614	3,609
	5분위	5,457	3,539	50,940	5,504	3,561	63,503	5,316	3,610	24,117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연간 총액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소득 수준과 0~5세 영유아 자녀수별로 보육교육비 및 현금 수당 수급자 가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보육교육비를 과거부터 지원받고 있었던 저소득층 보다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2~5분위 계층 중에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가구 비중의 증가가 더 크게 이루어 졌다. 이는 정부가 2005년 이후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4-6〉 소득 및 자녀수별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수, %)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보육 교육비 지원	전체	338 (37.5)	420 (51.0)	390 (55.2)	
	소득 수준	1분위	118 (65.6)	110 (66.7)	103 (72.5)
		2분위	85 (47.2)	113 (68.5)	99 (70.7)
		3분위	75 (41.7)	96 (57.8)	90 (64.3)
		4분위	42 (23.2)	64 (38.8)	67 (46.5)
		5분위	18 (10.0)	38 (23.0)	31 (22.0)
	영유아 자녀수	1자녀	212 (32.1)	285 (46.3)	279 (51.6)
2자녀 이상		126 (52.1)	136 (64.8)	111 (67.3)	

100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표 4-6〉 계속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현금 수당	전체	242 (26.8)	257 (31.1)	279 (39.5)	
	소득 수준	1분위	93 (51.7)	75 (45.5)	84 (59.6)
		2분위	60 (33.1)	57 (34.5)	74 (52.9)
		3분위	49 (27.2)	64 (38.8)	47 (33.8)
		4분위	24 (13.3)	31 (18.8)	39 (27.1)
		5분위	16 (8.9)	30 (18.1)	35 (24.8)
	영유아 자녀수	1자녀	162 (24.5)	185 (30.1)	213 (39.4)
2자녀 이상		80 (33.1)	72 (34.3)	66 (40.0)	

주: 1) 표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007년 현재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338가구이며 전체 샘플에서 37.5%를 차지한다. 소득 1분위 중 보육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수는 118가구이며 소득 1분위 가구에서 보육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비중은 65.6%이다.
 2) 현금 수당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연간 보육교육비 액수도 연도별로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확대 된 연도는 각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가 보육료 지원 단가 대비 지원 비율을 소득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었으며 연도별 지원 금액의 확대도 소득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2-6〉 참조).

〈표 4-7〉 소득 및 자녀 수별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비와 현금 수당 수급액 현황

(단위: 만원)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보육 교육비 지원	전체	178.47	213.67	245.14	
	소득 수준	1분위	177.67	218.19	215.14
		2분위	174.24	209.47	263.13
		3분위	163.75	225.15	265.64
		4분위	226.20	222.99	222.30
		5분위	153.82	168.68	276.56
	영유아 자녀수	1자녀	195.52	232.71	262.66
2자녀 이상		149.93	173.65	200.98	

〈표 4-7〉 계속

구분	소득분위		2007년	2009년	2011년
현금 수당	전체		73.55	74.24	116.64
	소득 수준	1분위	90.18	98.84	144.83
		2분위	48.83	55.92	149.52
		3분위	43.46	54.39	93.21
		4분위	153.94	125.73	37.80
		5분위	41.18	37.17	100.13
	영유아 자녀수	1자녀	88.83	92.08	134.70
2자녀 이상		42.58	28.05	58.01	

주: 1) 수급 가구의 영유아 자녀 1인당 받는 연간 총액으로서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현금 수당을 중복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나. 육아 휴직 정책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2006, 2009, 2011년)를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분석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OECD Family database가 적용한 Tax-Benefit model의 방법론에 따라 C-K 산업이 포괄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C-K 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우리나라 근로 여성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OECD Tax-Benefit model은 근로자의 임금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정의하였다. 임금의 성별 격차가 큰 국내 현실에서 OECD의 임금 기준은 국내 여성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복지패널자료 분석결과, C-K 산업에 종사하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6년 2,235,583원, 2009년 2,437,633원, 2011년 2,637,930원으로 산출되었다. 2011년도에 통상 급여의 40%가 50만원

이하인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784,426원, 통상 급여의 40%가 100만원 이상인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823,651원으로 산출되었다.

제2절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 분석 결과

1. 현금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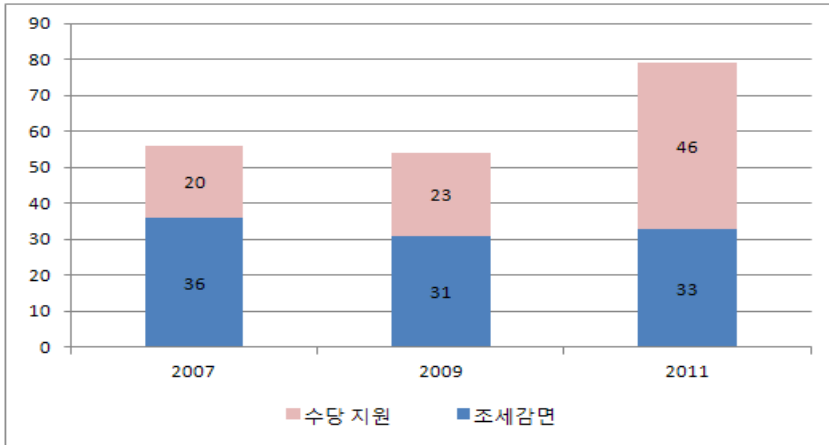
가. 지표1: 영유아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액수

0~5세 자녀를 양육 가정이 0~5세 자녀 1인당 받는 연간 총 현금 지원 액수는 2007년 56만원, 2009년 54만원, 2011년 79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현금 지원 액수는 2007~2009년도 사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에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원 액수 중 조세 감면으로 인해 받는 금액과 현금 수당으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 현재 조세 감면 혜택으로 받는 금액이 36만원으로 현금 수당 액수 20만원 보다 약 1.8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점차 감소하여 2011년 현재 영유아 자녀 1인당 연평균 현금 수당액은 46만원으로 영유아 자녀 1인당 연평균 조세 감면액 33만원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감면 액수와 현금 수당 액수 각각에 대한 2007~2011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0~5세 영유아 1인당 조세 감면액수는 정부의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36만원, 2009년 31만원, 2011년 33만원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반면, 현금 수당 지원 액수는 2007과 2009년 약 20만

원 수준에서 양육수당을 도입한 2011년에 46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4-1]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전체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현금지원액수를 소득 분위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 감면액수는 2007, 2009, 2011년 모든 기간 동안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 감면 혜택의 역진적인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수당 지원 정책은 양육 수당이 포함되기 이전인 2007년도와 2009년도에 소득 1분위 계층이 가장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가 가장 낮은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후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하여 현금 수당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 계층에서 지원받는 현금 수당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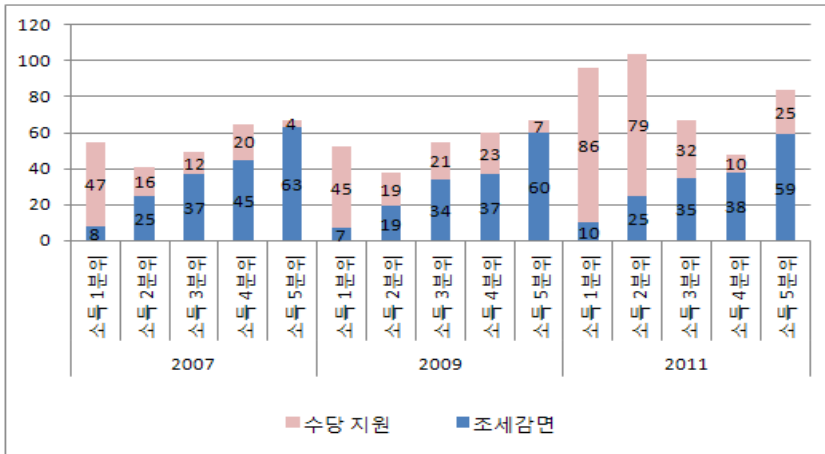
양육 수당이 도입된 이후인 2011년 현재 비교적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14) 조세 감면 액수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액의 변화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소득세 자체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 볼 수 있는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수당 지원 액수는 연평균 각각 86만원과 79만원으로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소득 3분위 집단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금 지원의 확대에 따라 현금 수당 액수가 어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현재 조세 감면액과 수당 지원액을 모두 합한 현금 지원액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소득 집단은 순서별로 보면 2분위, 1분위, 5분위, 3분위, 4분위로 나타났다. 소득 4분위 집단은 소득 5분위와 비교하여 조세 감면으로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고, 1~3분위 집단과 비교하여 혜택 받고 있는 현금 수당 지원도 적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현금 지원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⁵⁾.

[그림 4-2]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소득 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15) 소득집단별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4분위와 5분위 집단에서는 수급자 비중이 2007년 약 10% 내외, 2009, 2011년에 약 20%내외로 낮고 적은 수급자 수로 인하여 지원받고 있는 현금 수당 액수의 평균 금액도 연도별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4-6>, <표 4-7> 참조).

〈표 4-8〉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소득 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구분	① 조세 감면액			② 수당 지원	총 현금 지원액 (①+②)	
	자녀 공제	특별 공제	계			
2007년	전체	29	6	36	20	56
	소득 1분위	7	0	8	47	55
	소득 2분위	23	3	25	16	41
	소득 3분위	32	5	37	12	49
	소득 4분위	37	8	45	20	65
	소득 5분위	49	14	63	4	67
2009년	전체	25	7	31	23	54
	소득 1분위	6	0	7	45	52
	소득 2분위	17	2	19	19	38
	소득 3분위	28	6	34	21	55
	소득 4분위	30	8	37	23	60
	소득 5분위	43	17	60	7	67
2011년	전체	26	8	33	46	79
	소득 1분위	10	1	10	86	96
	소득 2분위	22	3	25	79	104
	소득 3분위	29	6	35	32	67
	소득 4분위	27	11	38	10	48
	소득 5분위	41	18	59	25	84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조세감면액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수당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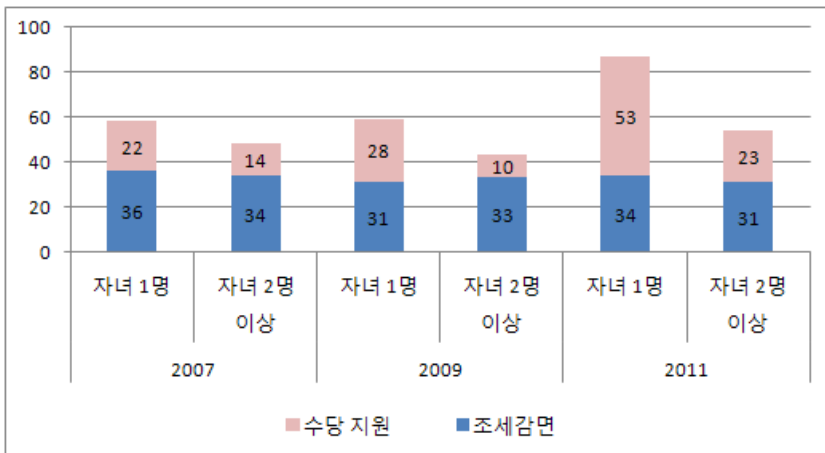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현금 지원 액수를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과 2명 이상인 가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녀 1인당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자녀 1명인 가정이 2명 이상인 가정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보다 다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더 많이 강조한 2009년도와 2011년도에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2007년에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하는 가정 보다 영유아 자녀 1인당 10만원을 더 지원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격차는 2009년도에는 16만원, 2011년도에는 33만원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동 결과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각 가구가 받는 현금

지원 혜택은 0~5세 자녀를 2명 키우는 가정에 비해 1명 키우는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 감면 제도의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제도 등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소득 공제 혜택으로 환급받는 조세 감면 액수는 크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양육 수당을 포함한 현재 중앙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은 자녀수와 무관하게 아동 1인당 일정한 액수가 지원되고 있다. 동 분석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축하금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자녀 이상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자녀 가정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 지원금을 합한다 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 가정이 지원 받는 현금 수당 액수는 그다지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3]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표 4-9〉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만원)

구분	① 조세 감면액			② 수당 지원	총 현금 지원액 (①+②)	
	자녀 공제	특별 공제	계			
2007년	전체	29	6	36	20	56
	자녀 1명	30	6	36	22	58
	자녀 2명 이상	28	5	34	14	48
2009년	전체	25	7	31	23	54
	자녀 1명	24	7	31	28	59
	자녀 2명 이상	26	7	33	10	43
2011년	전체	26	8	33	46	79
	자녀 1명	26	8	34	53	87
	자녀 2명 이상	25	7	31	23	54

주: 1) 자녀수는 0~5세 아동수를 의미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3) 조세감면액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수당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나. 지표2: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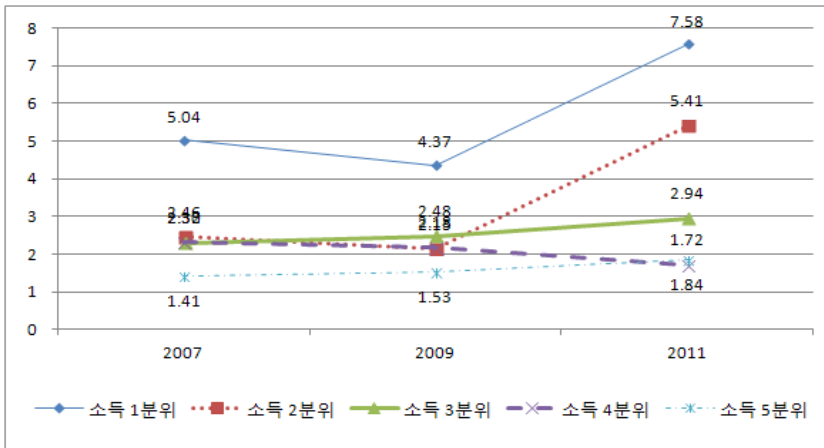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수가 가구균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25%, 2009년 2.19%, 2011년 3.05%로서 약 2~3%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비중의 변화를 보면 2007년~2009년 기간 동안에는 거의 모든 소득 집단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높은 현금 수당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최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집단이다.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우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2009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비중과 유사한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난 이후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와 2분위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도에 대부분 양육수당 혜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소득 3,4,5 분위 집단에서는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도와 유사하게 약 1~2%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4]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표 4-10>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

구분	① 가구동등화소득	② 총 현금 지원액			총현금지원액 비중 (②/①) × 100	
		조세감면액	수당지원	계		
2007년	전체	2,487	36	20	56	2.25
	소득 1분위	1,092	8	47	55	5.04
	소득 2분위	1,670	25	16	41	2.46
	소득 3분위	2,127	37	12	49	2.30
	소득 4분위	2,797	45	20	65	2.32
	소득 5분위	4,741	63	4	67	1.41

〈표 4-10〉 계속

구분	① 가구균등화소득	② 총 현금 지원액			총현금지원액 비중 (②/①)×100	
		조세감면액	수당지원	계		
2009년	전체	2,464	31	23	54	2.19
	소득 1분위	1,191	7	45	52	4.37
	소득 2분위	1,781	19	19	38	2.13
	소득 3분위	2,214	34	21	55	2.48
	소득 4분위	2,750	37	23	60	2.18
	소득 5분위	4,375	60	7	67	1.53
2011년	전체	2,586	33	46	79	3.05
	소득 1분위	1,267	10	86	96	7.58
	소득 2분위	1,924	25	79	104	5.41
	소득 3분위	2,277	35	32	67	2.94
	소득 4분위	2,792	38	10	48	1.72
	소득 5분위	4,565	59	25	84	1.84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조세감면액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수당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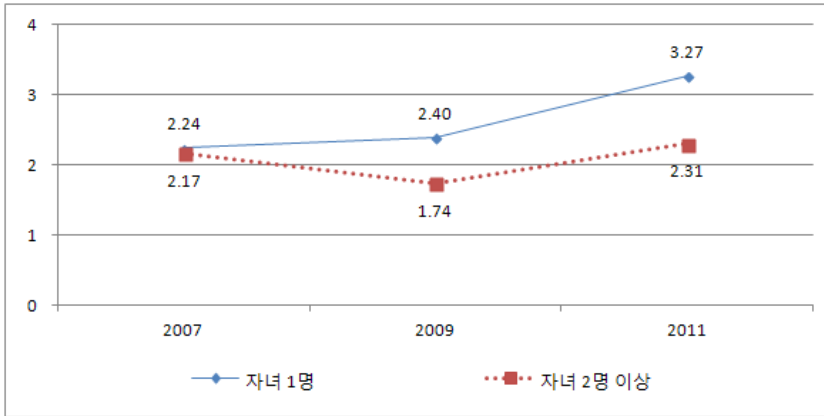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지원액수가 가구균등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녀수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현재 두 집단에서 모두 약 2%로서 영유아 자녀 1명인 가정과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이 확대된 2011년 현재 영유아 자녀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2.31%로 영유아 자녀 1명 가정의 3.27%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110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림 4-5]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표 4-11> 0~5세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만원, %)

구분	① 가구동등화소득	② 총 현금 지원액			총 현금 지원액 비중 (②/①)×100	
		조세감면액	수당지원	계		
2007년	전체	2,487	36	20	56	2.25
	자녀 1명	2,587	36	22	58	2.24
	자녀 2명 이상	2,216	34	14	48	2.17
2009년	전체	2,464	31	23	54	2.19
	자녀 1명	2,462	31	28	59	2.40
	자녀 2명 이상	2,470	33	10	43	1.74
2011년	전체	2,586	33	46	79	3.05
	자녀 1명	2,662	34	53	87	3.27
	자녀 2명 이상	2,338	31	23	54	2.31

주: 1) 자녀수는 0~5세 아동수를 의미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3) 조세감면액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수당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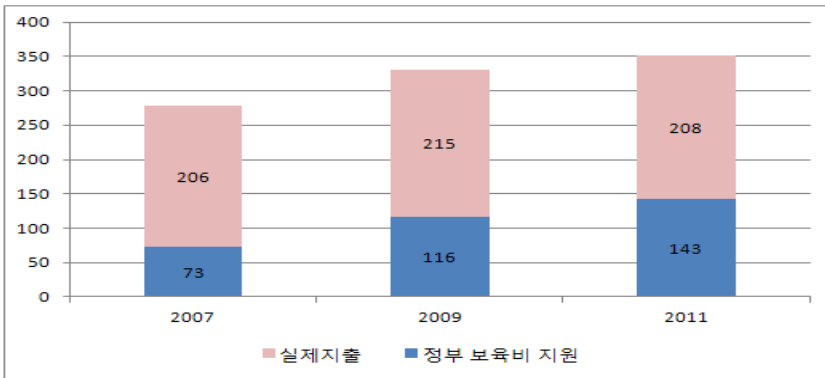
2.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

가. 지표 3: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 따라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시설 이용 비용 지원과 특별 공제 액수를 합하여 2007년 73만원에서 2009년 116만원, 2011년 143만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였다. 정부의 시설 이용 비용 지원을 제외하고 가정이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2007년 206만원에서 2009년 215만원, 2011년 208만원으로 별다른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는 교육교육비에서 특별 공제 액수까지 제외한 순 보육교육비용도 2007년 200만원, 2009년 208만원, 2011년 200만원으로 역시 별다른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지원 금액과 가정의 실제 지출을 합한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에 지출되는 총 비용은 2007년 273만원, 2009년 324만원, 2011년 34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고).

[그림 4-6]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전체 (2007~2011)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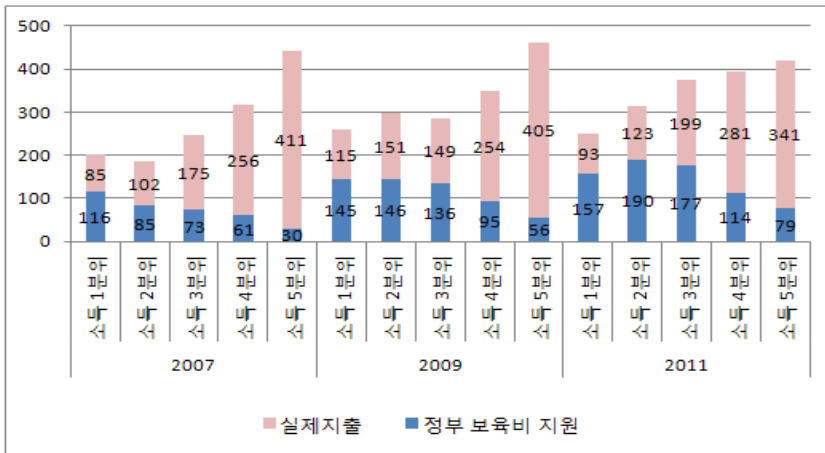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2007~2011년 기간 동안 모든 소득분위에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각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 액수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고소득층인 5분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가구의 실제 지출 비용을 합한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이 2011년 소득 3,4,5분위 집단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7~2009년도 까지만 하더라도 세 집단 간에 영유아 1인당 총 보육교육 비용에서 큰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림 4-7]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1인당 총 투자되는 보육교육 비용의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들어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감소한 것은 정부 지원금의 증가와 함께 특히 중산층인 3~4분

위의 경우 가구의 순 지출 액수가 증가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0~5세 영유아 1인당 총 투자되는 보육교육비의 소득 간 격차는 감소되었을지라도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표 4-12〉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구분	실제 지출비용 ①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			총 보육교육비용 ④=①+②	순 보육교육비용 ⑤=①-③	
		시설 이용 비용 지원 ②	특별공제 ③	계 ②+③			
2007년	전체	206	67	6	73	273	200
	소득분위1	85	116	0	116	201	85
	소득분위2	102	82	3	85	184	99
	소득분위3	175	68	5	73	243	170
	소득분위4	256	53	8	61	309	248
	소득분위5	411	16	14	30	427	397
2009년	전체	215	109	7	116	324	208
	소득분위1	115	145	0	145	260	115
	소득분위2	151	144	2	146	295	149
	소득분위3	149	130	6	136	279	143
	소득분위4	254	87	8	95	341	246
	소득분위5	405	39	17	56	444	388
2011년	전체	208	135	8	143	343	200
	소득분위1	93	156	1	157	249	92
	소득분위2	123	187	3	190	310	120
	소득분위3	199	171	6	177	370	193
	소득분위4	281	103	11	114	384	270
	소득분위5	341	61	18	79	402	323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실제 지출비용과 시설 이용 비용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결과이며, 특별공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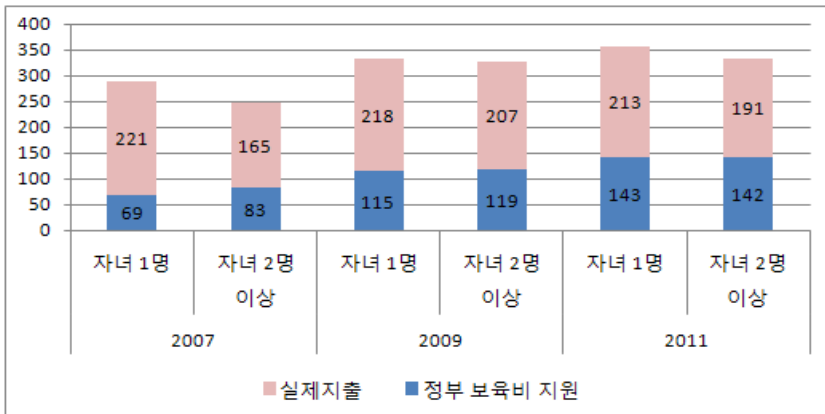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을 0~5세 자녀 1명 가구와 2명 이상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0~5세 자녀 1명당

연간 실제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용은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191만원으로서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지출하는 213만원보다 적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자녀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게서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적게 소요된다는 사실을 말한다. 자녀 양육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자녀 2명 이상을 함께 돌보아 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측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수별 지출 비용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0~5세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0~5세 자녀 1명당 실제로 지출하는 연간 보육교육 비용은 2007년 165만원, 2009년 207만원, 2012년 191만원으로 2007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2007년 221만원, 2009년 218만원, 2011년 213만원으로 비용이 감소하였다는 사실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그림 4-8]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만원)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이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게서 실제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아동 1인당 동일한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표 4-13〉 0~5세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 영유아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만원)

5구분	실제 지출비용 ①	정부 보육교육비 지원			총 보육교육비용 ④=①+②	순 보육교육비용 ⑤=①-③	
		시설 이용 비용 지원 ②	특별공제 ③	계 ②+③			
2007년	전체	206	67	6	73	273	200
	자녀 1명	221	63	6	69	284	215
	자녀 2명 이상	165	78	5	83	243	160
2009년	전체	215	109	7	116	324	208
	자녀 1명	218	108	7	115	326	211
	자녀 2명 이상	207	112	7	119	319	200
2011년	전체	208	135	8	143	343	200
	자녀 1명	213	135	8	143	348	205
	자녀 2명 이상	191	135	7	142	326	184

주: 1) 자녀수는 0~5세 아동수를 의미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3) 실제 지출비용과 시설 이용 비용 지원은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분석결과이며, 특별공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초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나. 지표 4: 정부 지원 전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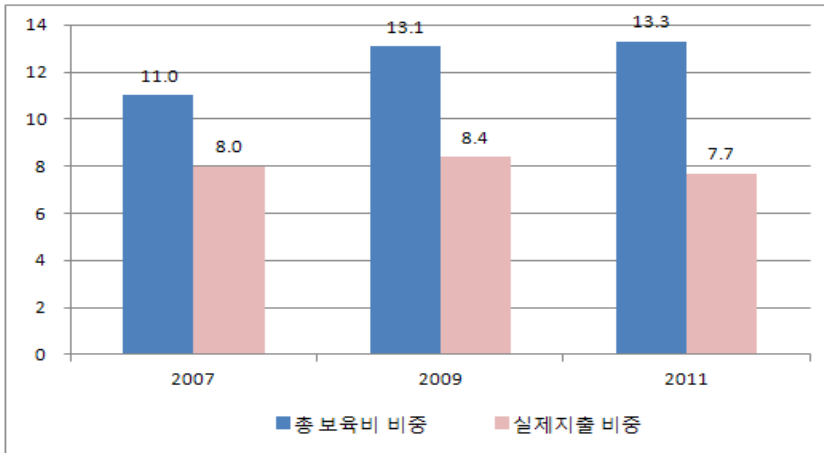
정부로부터 받은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가정이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합한 금액은 정부의 지원이 없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가구가 지출해야 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순 보육교육비용”은 총 보육교육비용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시설 이용에 대

한 보육교육비 지원액과 특별 공제에 따른 조세 절감액을 제외한 비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 보육교육비용을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가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보육교육 비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총 보육교육비용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는 2007년도 2.9%p, 2009년 4.7%p, 2011년 5.5%p로 나타나 정부 지원으로 인해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 가구의 순 보육교육비용이 가구동등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0%, 2009년 8.4%, 2011년 7.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볼 때 보육교육비에 대하여 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담 수준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14〉 참고).

[그림 4-9]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2007~20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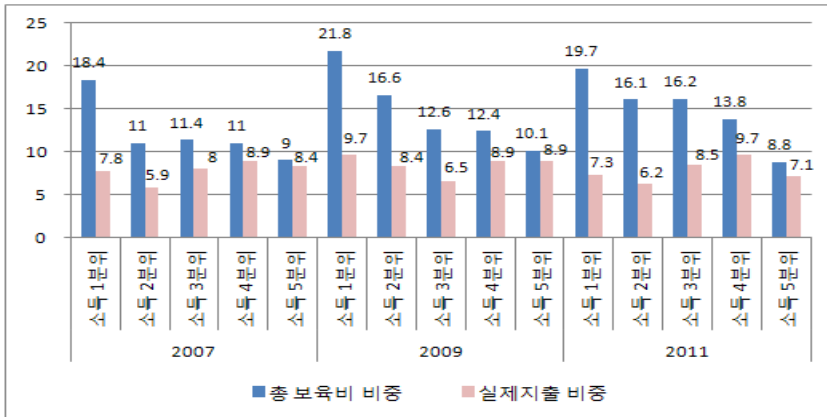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간 차이를 소득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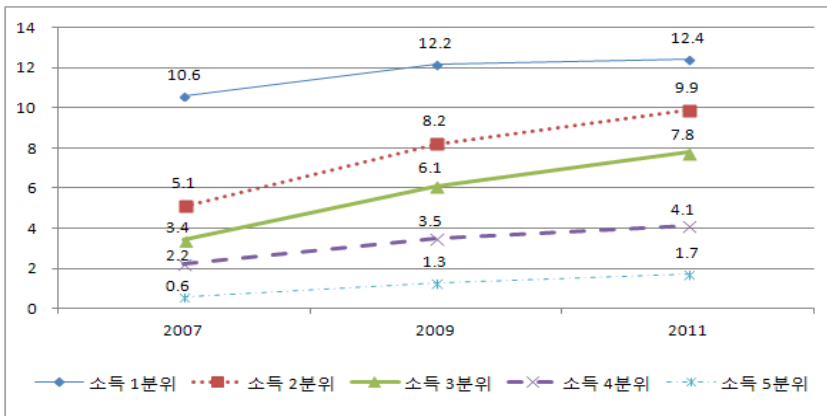
[그림 4-10]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그림 4-11] 총 보육교육비 지출 비중과 가구 실제 지출 비중 간의 차이 : 소득수준별 (2007~2011)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모든 소득 집단에서 두 비중 간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소득 집단에서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으로 인하여 부담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소득 4분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중산층인 4분위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4-14〉 참고).

〈표 4-14〉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소득수준별 (2007~2011)

(단위: 만원, %, %p)

구분	가구동등화 소득 ①	총보육 교육비용 ②	순보육 교육비용 ③	보육교육비용 비중			
				총보육교육비중 ④=②/①	순보육교육비중 ⑤=③/①	감소분 ④-⑤	
2007년	전체	2,487	273	200	11.0	8.0	2.9
	소득분위 1	1,092	201	85	18.4	7.8	10.6
	소득분위 2	1,670	184	99	11.0	5.9	5.1
	소득분위 3	2,127	243	170	11.4	8.0	3.4
	소득분위 4	2,797	309	248	11.0	8.9	2.2
	소득분위 5	4,741	427	397	9.0	8.4	0.6
2009년	전체	2,464	324	208	13.1	8.4	4.7
	소득분위 1	1,191	260	115	21.8	9.7	12.2
	소득분위 2	1,781	295	149	16.6	8.4	8.2
	소득분위 3	2,214	279	143	12.6	6.5	6.1
	소득분위 4	2,750	341	246	12.4	8.9	3.5
	소득분위 5	4,375	444	388	10.1	8.9	1.3
2011년	전체	2,586	343	200	13.3	7.7	5.5
	소득분위 1	1,267	249	92	19.7	7.3	12.4
	소득분위 2	1,924	310	120	16.1	6.2	9.9
	소득분위 3	2,277	370	193	16.2	8.5	7.8
	소득분위 4	2,792	384	270	13.8	9.7	4.1
	소득분위 5	4,565	402	323	8.8	7.1	1.7

주: 1)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2) 총보육교육비용은 실제지출비용과 시설이용비용지원을 합한 금액이며, 순보육교육비용은 실제지출비용에서 특별공제로 인한 조세절감액을 제외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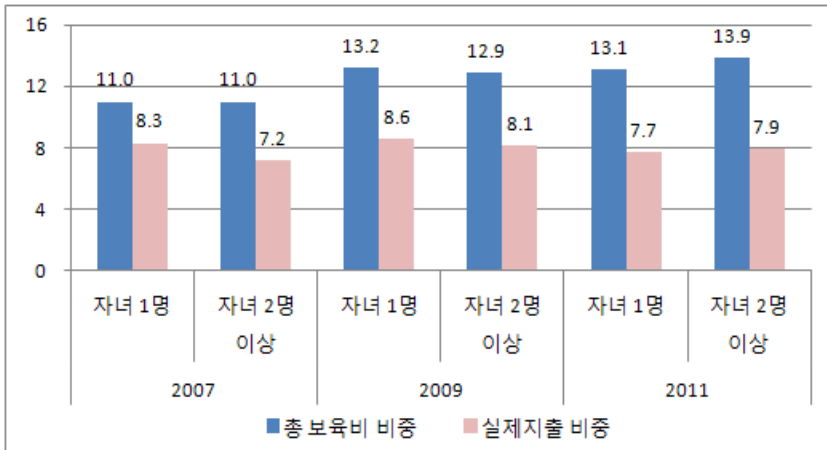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총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를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영유

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간에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과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모두에서 비중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원에 따른 각 가정의 보육교육비 지출 부담은 영유아 자녀수와 무관하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유아 1인당 순 보육교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7년과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각각 7.2%와 8.1%로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의 8.3%와 8.6%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영유아 1인당 순 보육교육비용 비중은 영유아 1명 가정이 7.7%, 영유아 2명 이상의 가정이 7.9%로서 두 집단 간에 유사하거나 자녀 2명 이상 가정에서 약간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가구가 느끼는 부담 감면 정도가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1명 가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4-12]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녀수별 (2007~20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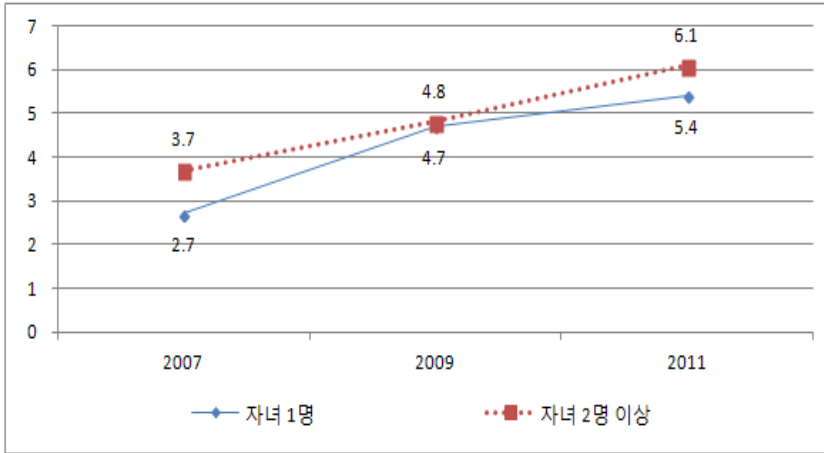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120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림 4-13] 총 보육교육비 지출 비중과 가구 실제 지출 비중 간의 차이
: 자녀수별 (2007~2011)



주: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표 4-15>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녀 수별 (2007~2011)
(단위: 만원, %, %p)

구분	가구동등 화소득 ①	총보육 교육비용 ②	순보육 교육비용 ③	보육교육비용 비중			
				총보육교육비중 ④=②/①	순보육교육비중 ⑤=③/①	감소분 ④-⑤	
2007년	전체	2,487	273	200	11.0	8.0	2.9
	자녀 1명	2,587	284	215	11.0	8.3	2.7
	자녀 2명 이상	2,216	243	160	11.0	7.2	3.7
2009년	전체	2,464	324	208	13.1	8.4	4.7
	자녀 1명	2,462	326	211	13.2	8.6	4.7
	자녀 2명 이상	2,470	319	200	12.9	8.1	4.8
2011년	전체	2,586	343	200	13.3	7.7	5.5
	자녀 1명	2,662	348	205	13.1	7.7	5.4
	자녀 2명 이상	2,338	326	184	13.9	7.9	6.1

주: 1) 자녀수는 0~5세 아동수를 의미함.
2) 2010년 기준 실질가격임
3) 총보육교육비용은 실제지출비용과 시설이용비용지원을 합한 금액이며, 순보육교육비용은 실제지출비용에서 특별공제로 인한 조세절감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2007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3. 모성 휴가 지원 정책

가.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2006년 이후로 육아휴직기간은 총 1년 혹은 52주로서 총 휴직 기간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육아 휴직 급여가 2006년 월 40만원에서 2009년 월 50만원으로 상승하고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가 급여로 지급됨에 따라 임금의 100%가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 휴직기간은 증가하였고 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기간은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평균 월소득 수준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역시 상승하였다(〈표 4-16〉 참고).

〈표 4-16〉 지표 8: 육아 휴직 관련 기본 지표

구분	2006	2009	2011
육아휴직기간 (주)	52	52	52
임금 100% 휴직 급여 지원 가정 시 육아휴직기간	8.8	10.4	①20.8 ②18.2
휴직급여가 지원되지 않는 휴가 기간	43.2	41.6	①31.2 ②33.8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17	20	①40 ②35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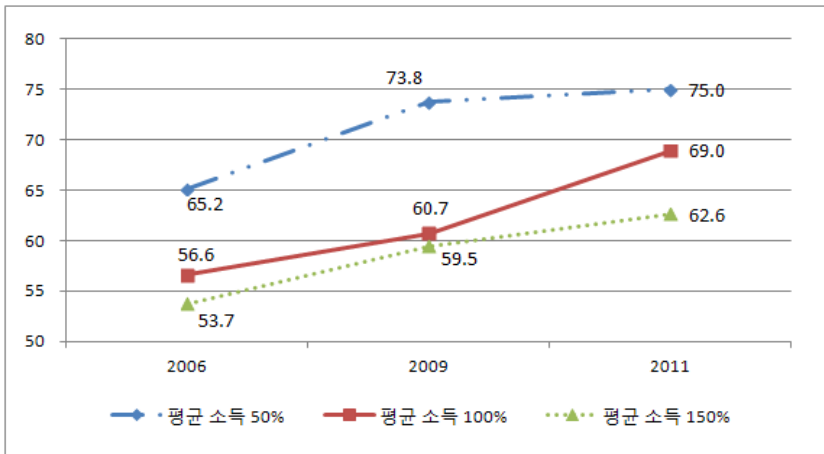
나.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육아휴직급여액의 변화는 2006-2011년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급여액을 400,000원에서 500,000으로 인상

한 결과,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아진 집단은 부부가 각각 평균 임금의 50%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구이다. 그 다음으로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계층은 평균 임금의 150% 소득 수준인 맞벌이 가구이다.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가장 큰 소득대체율의 증가를 보인 집단은 중산층인 평균 소득의 100% 수준의 맞벌이 가구이다. 그 다음이 상류층인 150%, 그리고 평균 소득의 50% 수준의 맞벌이 가구는 73.81%에서 75.00%로 가장 낮은 증가를 보였다.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여 놓았다.

[그림 4-14]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소득수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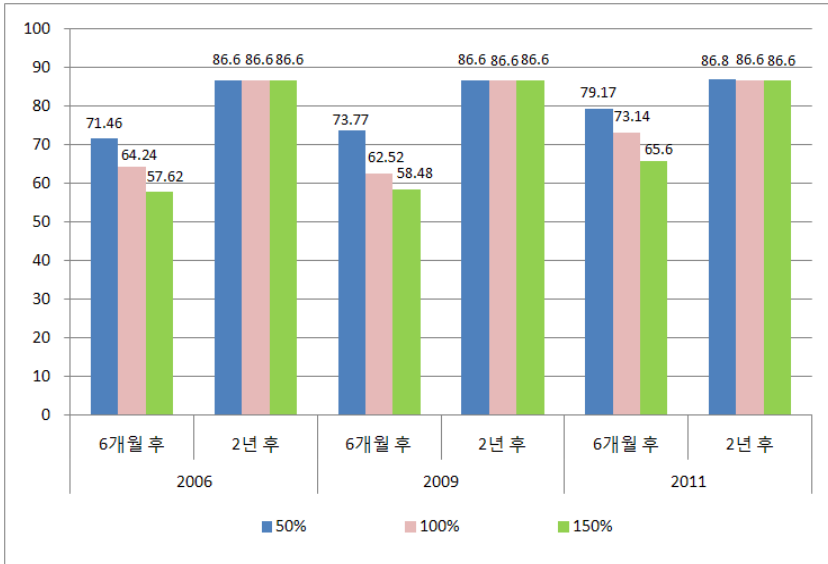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다. 지표 7: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기간의 순 동등화 소득

순 동등화 소득으로 산출한 출산 전 대비 6개월 시점에서의 소득대체율에 대한 제도 변화의 영향에서도 앞의 지표 6의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액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소득 100% 수준 가구의 순 동등화 소득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다. 그 다음이 150% 수준, 가장 적은 변화는 50% 수준의 가구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중산층 이상의 수혜를 높이려는 정책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4-15]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제1절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 현금 지원 정책

본 연구 결과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정부의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실제로 지원 받는 현금 지원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금 지원액의 증가는 조세 감면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이 아닌 최근에 도입한 양육 수당 및 다양한 바우처 사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그동안 자녀에 대한 기본 공제액을 인상하고 다자녀 추가 공제액수를 확대하는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자녀로 인해 가구가 받는 세제상의 혜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의 소득 공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구의 연간 소득 및 이에 따라 지불하는 소득세의 크기에 따라 감면받게 되는 세액 공제 액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세 감면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정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체감도를 증진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세법개정안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조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받게 되는 조세 감면 혜택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이 기존의 소득 공제 방식과 비교하여 자녀 양육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갖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금 지원 현황을 소득 계층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소득 공제 정책의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세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일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현금 수당으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이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에 비해서는 현금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소득 4분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전체 0~5세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소득 4분위가 받는 현금 지원 수급 액수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가 얼마나 많이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직접 키우는 것을 선택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금 지원 현황을 0~5세 영유아 자녀수로 비교 분석한 결과 영유아 1인당 지원받는 현금 지원액은 영유아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이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격차는 연도별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1인당 지원 받는 현금 지원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영유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다자녀 우대 지원 정책은 세제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현물 지원¹⁶⁾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금 지원에서도 아동 1인당 동일한 급여액을 지원하고 둘째 이상 자녀에게 더 많은 급여액을 지원하는 등 자녀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양육수당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

16)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현물 지원에는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 장학금 우선 지원, 주택 특별 공급 및 주택 자금 대출 지원, 전 기로 감면 등이 포함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을 제공하고 있을 뿐 역시 자녀수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을 포함하여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 지원 정책들이 자녀수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수당 정책과 보육료 지원 정책이 자녀수를 고려하여 다자녀 가족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윤정·이지혜, 2012).

2. 보육 서비스 지원

정부가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5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실제로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가구가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별다른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시설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를 지원하여 가구가 부담하는 시설 이용 비용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가구가 시설 이용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녀의 보육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가구가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스스로 절감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갖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소득 수준별 비교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 각 가정이 자녀 보육교육비에 실제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최소소득층인 5분위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증가와 함께 가구의 순 지출 비용

증가로 인하여 0~5세 아동 1명에게 투자하는 총 보육교육 비용은 2011년 현재 소득 3,4,5 분위 집단 간에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보이던 소득 집단 간 보육교육비 격차는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집단 간의 격차 감소는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금 증가와 더불어 가구의 순 지출 증가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가구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위 집단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 수준은 오히려 4분위 소득 집단에서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가 국내 부모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는 이상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정책으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보육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감면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 현황을 가구가 양육하는 0~5세 자녀수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0~5세 자녀 1명당 실제 지출하는 보육교육비가 0~5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감소한 반면,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향후 보육교육비 지원에 있어 다자녀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3. 육아 휴직 정책

본 연구 결과 육아휴직급여의 정액제 인상 및 정률제 변화로 인해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이러한 정

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정액제 하에서의 급여의 증가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정률제로의 변화는 평균소득 이상의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았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의 증가를 가져와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잔존하고 있고,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 수가 적다는 점,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수준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육아지원에서의 형평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육아휴직제도는 정규직-대규모 사업장-여성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성별 간 수급 불균형, 산업, 직업, 소득수준 등 개별 근로자의 계층적 특성에 따른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지원 수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르는 고용상의 불이익 및 차별, 원직장 복귀 부담 대비 낮은 법적 보장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육아육직의 낮은 활용도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낮은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액 지원액을 올리거나 정률제로 바꾸는 노력을 통해, 상대적 고소득 계층이 육아휴직을 통한 육아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더 높아 육아휴직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저소득 계층의 육아휴직 활용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비정규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소득 개인 근로자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도 낮을 가능성이 높아 가구 단위의 생계비 여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통한 근로자의 육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 증가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선택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근로자의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고용관계와 사업장의 환경적 특성도 크게 작용한다고 볼 때, 육아휴직제도의 노동력 수요측과 관련한 개선 없이 현재 체계 하에서의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고소득 계층만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 지원의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향후 정책 방향

종합컨대 본 연구 결과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감면하여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내용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들은 보편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편 지향적인 정책이 중산층 이상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가정은 자녀에 대한 높은 투자 욕구로 인하여 보육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보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는 중산층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자녀 양육 지원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편화하고 있지만 중

산층이 체감하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이 감면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본다.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한 높은 욕구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고도의 상업화된 사회가 존재하는 한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그 효과성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 심리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영유아 보육교육 산업의 상업적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현금 혹은 서비스를 통한 개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소득 계층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평균적인 수준의 보육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평균 수준 이상의 보육 교육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보다는 중산층의 보육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등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산층 이상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서 세제상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이 추가적인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상의 정책들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회적인 우대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이 체감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당 수급과 바우처 지원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정책들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육 수당이나 장애 아동 수당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 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타 현금 지원 정

책이라 하더라도 가구의 경제적인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보험 체계 하에서의 급여도 자녀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적 연금, 육아 휴직 급여 및 실업 급여 등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의 급여액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경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가 실제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해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일차적 방안은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 사업체에 대해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적발과 제재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보험의 가입 유인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 지원 제도는 그 예가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활용은 정규직에 비해 극히 낮았으므로 이들의 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임신·출산 때문에 고용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어 자신의 모성보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실직 전 임금의 100%인 산전후휴가 급여에 비해 낮다. 이직할 경우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고용보험

조항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시적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180일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성보호제도의 수급자격에서 180일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수급자격을 완화하면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따라서 부부의 피보험가입 기간을 합산하거나 부부 중 1인만 180일 이상 기여하면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선영 외, 2011).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회보장청이 매해 수행하고 있는 가족정책에 대한 평가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가족 정책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각 영역별 정책이 추구하는 지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평가 체계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감면”을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표방하는 다른 측면에서의 목표 - 예를 들면 “일과 가정 양립의 조화” -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및 현황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내 양육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2006~2011년 기간에 걸쳐 분석을 수행하였는 바, 2013년도에 와서 보육교육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고 양육 수당 역시 전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보다 최근의 자료

가 축적되는 대로 분석을 업데이트하여 최근 정책 현황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 고용노동부(2013). 출산 및 육아휴직현황 (이나라지표참고자료).
- 권혜자(2011). 가입기 여성 취업자의 모성보호 활용실태와 사각지대-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중심으로, 고용이슈, 2011년 11월.
- 김미곤 외(2010). 2009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주(2006). 육아휴직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 22권 제4호, 157-195쪽.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2012). 여성노동자의 모성 보호 및 성희롱 실태조사, 30인미만 서비스업 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2012년 9월 18일(화) 오후 2시~5시 국회도서관 421호,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당 합당 은수미 의원실.
- 김정호(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34:1, pp.169-197.
- 박선영 외(2011).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방안,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 새로마지 플랜 2015-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2). 2011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2).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
- 신윤정·김윤희(2012).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윤정·이지혜(201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부(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1),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서.
- 윤홍식(2006).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도입의 원칙과 방향, 노동리뷰, 제23호, 63- 68쪽.
- 정부합동(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 한국개발연구원(2012). 결혼·출산·육아 지원 사업군 심층 평가.
- 한국고용정보원(2012). 고용보험 평가센터 지정 운영사업 1차년도 최종보고서.
- Thiemann, Andreas (2013).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독일 사례, 국제심포지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제도와 실행효과」2013년 8월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프랑스 사회보장청(2013). *Projec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 Programme de qualité et d'efficience, Famille.*
- DREES (2007). *Enquête, Modes de garde et d'accueil des jeunes enfants.*
- DREES (2009). *Les dépenses pour la garde des jeunes enfants. études et résultats, N° 695, 1-8.*
- DREES (2011a). *L'offre d'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études et résultats, N° 763, 1-8.*
- DREES (2011b). *Travailler et garder son enfants en bas âge. études et résultats, N° 749, 1-8.*
- DREES (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études et résultats, N° 788, 1-8.*

- Letablier, M. T., Jönsson, I. (2005). Caring for Children: The logics of public action, in Gerhard, U., Knijn, T., and Weckwert, A. (ed.) *Working Mothers in Europe*, Cheltenham, UK,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pp.41-57.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Paris: OECD.
- OECD (2013). *Family data base*. Paris: OECD.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3).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2013). 『2013년 세법개정안』.

부록 1. 조세 감면액 추계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현금 지원 정책에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과 수당 지원을 포함시켰다. 조세 절감액은 0-5세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 적용에 따른 세후소득 증가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0-5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의 조세 절감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방법에 따라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분리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소득 이외의 분류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은 기본적으로 세전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하게 된다([부록 그림 1] 참조). 여기서 우리의 분석대상인 0-5세 자녀와 관련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산출과정에서 적용되는 항목이므로 본고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정보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를 추계하였다.

[부록 그림 1] 소득세 과세표준 결정과정



개인별 종합소득세 추계를 위해 근로소득, 자영업자 사업소득, 농림축산어업소득, 부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대상 소득으로 고려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이 제공하는 개인별 소득정보에는 근로소득, 자영업자 사업소득(농림축산어업 경영주 제외), 농림축산어업 경영주 소득 및 부업소득이 포함된다. 여기서 농림축산어업 소득은 소득세법 상 사업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비과세 소득과 과세소득이 합산되어 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작물재배에 따른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며,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800만원 이하 농가부업소득과 연600만원 이하 산림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그 외 축산소득과 어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기 위해 총액으로 주어진 인별 농림축산어업 경영주 소득을 원자료의 가구 농림축산 어업 순소득정보와 개인별 경제활동 상태정보를 비교 검토하여 개인 어업순소득과 농림축산소득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총액으로 주어진 농림축산어업소득 중 과세대상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다소 부족하지만, 과세대상소득의 과소과약에 따른 과소추정 문제를 일정정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통해 과세대상 농림축산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적용하였다. 먼저 가구 경작기 규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논 또는 밭을 경작중인 농림축산업 소득자의 경우 동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반대로 농림축산업 소득이 있으면서 논 또는 밭을 경작하고 있지 않으면서 사육중인 소가 30마리를 초과하거나 돼지 500마리 초과 또는 닭 1,500마리를 초과하는 가구에 속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가구총계로 주어진 부동산임대소득은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가 임대자산을 공유한다는 가정 하에 균분하여 개인별 소득으로 변환하였다.

종합소득세 추계 시 고려된 비과세감면 및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감면으로 근로소득자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부록표 1-1>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순소득 자료를 사용하는 사업소득(농림축산어업 포함)은 필요경비 공제를 별도로 적용하지 않았다.

〈부록표 1-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2007	2009	2011
총급여구간	공제액	공제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총급여액의 80%	좌동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좌동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좌동
4,500만원 이하	1,2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좌동
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좌동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종합소득공제로 인적공제항목 중 기본공제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를,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여성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 출산·입양('08년 신설) 공제, 그리고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하였다. 연금보험료공제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보험료 납부액을 개인 취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를 활용하여 연도별 보험요율 산식에 따라 별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근로소득자 특별공제 항목 중 정보 부족으로 산출이 어려운 주택자금공제를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항목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유무와 직업정보에 기초하여 연도별 보험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가구 대표납세주에 한하여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납세주의 경우 부양자까지, 기타의 경우 본인 교육비) 등 〈부록표 1-2〉의 연도별 지출공제 항목과 한도액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세법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중 특별공제 총액이 표준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 특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적용하였다.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활용정보의 한계로 원천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고의 종합소득세 추정규모와 그에 따

른 소득공제의 조세절감 효과는 다소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록표 1-2〉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적용항목

(단위: 만원)

구분		2007	2009	2011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100	150	좌동
		배우자공제	100	150	좌동
		부양가족공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자,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0	150	좌동
	추가공제	경로자우대	100(65세이상) 150(75세이상)	100(70세이상)	좌동
		부녀자공제	50	좌동	좌동
		6세이하 공제	100	좌동	좌동
		출산/입양공제	-	200	좌동
다자녀추가공제		50+(자녀수-2)* 50	좌동	100+(자녀 수-2)*200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본인	전액	좌동	좌동
	특수지역연금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	본인	전액	좌동	좌동
근로자 특별 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전액	좌동	좌동
		노인장기요양보험	-	전액 (08년신설)	좌동
		고용보험	전액	좌동	좌동
		보장성보험	100 한도	좌동	좌동
	의료비	본인	급여 3%이상 전액	좌동	좌동
		부양가족	급여 3%이상 300 한도	급여 3%이상 700	좌동
	교육비	본인	전액	좌동	좌동
		미취학아동	200 한도	300 한도	좌동
		초중고	200 한도	300 한도	좌동
		대학	700 한도	900 한도	좌동
이사혼인장례		각 100 한도	-(08년폐지)	-	
표준 공제	근로소득자	100	좌동	좌동	
	종합소득자	60	좌동	좌동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구한 과세표준액에 <부록표 1-3>의 연도별 세율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부록표 1-4>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부록표 1-3> 연도별 세율표

연도	과표	산출세액
2007	1,000만원 이하	과표x8/10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80만원+1,000만원 초과금x17/100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590만원+4,000만원 초과금x26/100
	8,000만원 초과	1,630만원+8,000만원 초과금x30/100
2009	1,200만원 이하	과표x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 초과금x16/1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16만원+4,000만원 초과금x25/100
	8,800만원 초과	1,666만원+8,000만원 초과금x35/100
2011	1,200만원 이하	과표x6/1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000만원 초과금x16/1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000만원 초과금x24/100
	8,800만원 초과	1,590만원+8,000만원 초과금x35/100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부록표 1-4>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도	세액구간	공제액
2007-2011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55/100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 산출세액*30/100
	공제한도	50만원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어떤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을 t 라 하면, 0-5세 자녀로 인한 조세 절감액 즉, 간접적인 양육보조금 s 는 아래의 식

1)과 같이 0-5세 자녀가 없을 때의 가상의 종합소득세액 \tilde{t} 와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1) s = \tilde{t} - t$$

0-5세 자녀로 인한 조세절감액 s 의 도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세 t 는 세전소득 x 와 납세자의 직업 등 특성과 그가 속한 가구 구성에 의존하며 다음의 일반적인 소득세 산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t = r(x - a - d) - c$$

r 은 세율체제로 과세표준 구간별 직면하는 한계세율을 나타내며, a, d, c 는 각각 비과세·감면 등 조정비용,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로 이들 역시 세전소득과 세제요건에 의존한다. 이때, 소득공제 d 는 0-5세 자녀 양육과 관련한 공제 d^b 와 그 밖의 기타 소득공제 d^p 로 구분할 수 있다.

$$3) t = r(x - a - (d^b + d^p)) - c$$

따라서, 0-5세 자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d^b = 0$) 가상의 소득세 \tilde{t} 는 다음의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4) \tilde{t} = \tilde{r}(x - a - d^p) - \tilde{c}$$

한편, d^b 는 자녀부양에 대한 인적공제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출에 대한 특별공제로 구분된다.

$$5) d^b = d_p^b + d_e^b$$

따라서 각 공제규모의 비중을 조세절감액에 곱하여 0-5세 자녀 양육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인한 조세 절감액 기여분을 산출할 수 있다.

$$6) s = \underbrace{s \cdot \frac{d_p^b}{d^b}}_{s_p} + \underbrace{s \cdot \frac{d_e^b}{d^b}}_{s_e}$$

상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각 가구원의 s_p, s_e 를 합산하여 개별 가구의 0-5세 자녀 양육 조세 절감규모를 산출하였다.

부록 2. 육아 휴직 급여 추계 방법론

1. 지표 5: 육아휴직관련 기본 지표

① 총 육아휴직기간(주)

제도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부터 고용보호가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최대 1년으로 52주이다.

②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2006년: 육아휴직급여는 400,000원으로 일정액이다. 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2006년 평균 월급여는 2,235,583원이었다. 따라서 대략 17%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2009년: 육아휴직급여는 500,000원으로 일정액이다. 복지패널자료에 따르면 2009년 평균 월급여는 2,437,633원이었다. 따라서 대략 20%가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율은 1안을 따르는 경우 40%, 2안을 따르는 경우 35%로 추계되었다. 2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율을 추계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25세부터 45세까지 가임기에 해당하는 전일제 임금근로자에 대해 모든 소득 구간의 남녀 육아휴직 이용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육아휴직급여를 50만원 지급받는 집단(월 통상임금 1,250,000원 이하)의 급여율과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에 해당하는 집단(월 통상임금 2,500,000원 이상)의 급여율을 구한다. 각 집단의 임금 분포 비중을 반영하여 최종 평균급여율을 구한다.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을 지급받는 집단인 월 통상임금 1,250,000원 이하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784,426원이며, 육아휴직급여 100만원

을 지급받는 집단인 월 통상임금 2,500,000원 이상 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823,651원이다. 1,250,000원 이하 임금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율은 $(500,000 \div 784,426) \times 100 = 63\%$ 이며, 2,500,000원 이상 임금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율은 $(1,000,000 \div 3,823,651) \times 100 = 26\%$ 이다. 각 소득 집단의 상대적인 비중은 월 125만원 이하 임금 근로자 16.66%, 월 125만원 ~ 월 250만원 사이의 임금 근로자 26.90%, 월 250만원 이상 임금 근로자 56.52%이다. 따라서 평균 급여율은 $(63\% \times 0.16) + (40\% \times 0.26) + (26\% \times 0.56) = 35\%$ 이다.

③ 임금의 100%가 휴직 급여로 지원된다고 가정할 때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기간 52주에 년도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④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 기간 - 총 휴직 기간에서 앞의 ③에서 구한 기간을 제하여 추정하였다.

2. 지표 6: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2011년은 평균 임금 수준의 50%를 벌고 있는 사람의 임금이 40%는 659,482원으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인 500,000원 보다 높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월 659,482원이 지급된다. 2011년 평균 임금 수준의 100%와 150%를 벌고 있는 사람의 임금이 40%는 상한액 1,000,000원을 상회하므로 상한액인 1,000,000원을 지급받는다.

(부록표 2-1) 지표 9: 자녀 출생 6개월 이후 육아 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소득수준별

연도	소득 수준 ¹⁾	부부	둘째 자녀 출생 전 소득액		둘째 자녀 출생 6개월 후 소득액		소득대체율 (B/A*100)
			개인	가구(A)	개인	가구(B)	
2006년	50%	남편	1,117,792	2,328,571	1,117,792	1,517,792	65.18
		아내	1,117,792		400,000		
	100%	남편	2,235,583	4,657,142	2,235,583	2,635,583	
		아내	2,235,583		400,000		
	150%	남편	3,353,375	6,985,713	3,353,375	3,753,375	
		아내	3,353,375		400,000		
2009년	50%	남편	1,218,817	2,328,571	1,218,817	1,718,817	73.81
		아내	1,218,817		500,000		
	100%	남편	2,437,633	4,657,142	2,328,571	2,828,571	
		아내	2,437,633		500,000		
	150%	남편	3,656,450	6,985,713	3,656,450	4,156,450	
		아내	3,656,450		500,000		
2011년	50%	남편	1,318,965	2,637,930	1,318,965	1,978,447	75.00
		아내	1,318,965		659,482		
	100%	남편	2,637,930	5,275,860	2,637,930	3,637,930	
		아내	2,637,930		1,000,000		
	150%	남편	3,956,895	7,913,790	3,956,895	4,956,895	
		아내	3,956,895		1,000,000		

주: 1) 평균 소득 대비 소득 수준임

2)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2011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2차년도(2006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3. 지표 7: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기간의 순 동등화 소득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기간의 순 동등화 소득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추계하였다.

- ① 자녀 1명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둘째 자녀 출산 전 1인당 가처분소득을 먼저 구한다.
- ② 가처분소득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세금과 사회보험에는 소득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포함하였다 (<부록표 2-2> 참조).

- ③ 과세 대상 소득은 비과세소득인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으로서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 ④ 월평균 임금을 연평균 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 임금의 50%, 100%, 150%를 구한 결과 세 소득 집단 모두 과세 표준에 따라 한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였다 (<부록표 2-3> 참조).
- ⑤ 남편과 아내의 가처분 소득을 합하여 가구 가처분 소득을 구하고, 동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적용하여 추가적인 가구원의 증가를 반영하였다. 즉, 출산 전 가구가처분소득을 3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인당 가구소득을 구하였다.
- ⑥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출산 후 6개월, 1년, 2년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남편의 경우 출산 전과 똑같이 근로소득을 벌고 있다고 가정한다.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아내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만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보험료만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공제한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동안 모두 사회보험료 가운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만 직장 복귀 이후 일시 혹은 분할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이며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8년부터 전액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세와 지방세는 없다. 2006년에도 500백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비과세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출산 후 가처분소득을 4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1인당 가처분소득을 구한다.

〈부록표 2-2〉 국내 사회보험요율

구분	기준 (×보험요율)	2006		2009		2011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5%	4.5%	4.5%	4.5%	4.5%	4.5%	
건강보험	보수월액	2.24%	2.24%	2.54%	2.54%	2.82%	2.82%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	-	4.78%	4.78%	6.55%	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임금총액	0.45%	0.45%	0.45%	0.45%	0.55%	0.55%

〈부록표 2-3〉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과세표준		2006	2009	2011
1구간	10,000,000 이하 ('08 이전)	8%		
	12,000,000 이하		6%	6%
2구간	10,000,000 초과 40,000,000 이하 ('08 이전)	17%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6%	15%
3구간	40,000,000 초과 80,000,000 이하 ('08 이전)	26%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5%	24%
4구간	80,000,000 초과 ('08 이전)	35%		
	88,000,000 초과		35%	35%

154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부록표 2-4) 지표 10: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평균 소득 50%

연도	기간	구분	개인소득 (A)	사회 보험료 (B)	소득세 (C)	지방세 (D)	세금 제외 가처분소득 A-(B+C+D)	가구 가처분 소득 (E)	1인당 가처분 소득
2006년	자녀 출생전	남편	1,117,792	80,369	115,025	11,502	910,895	1,821,790	1,051,811
		아내	1,117,792	80,369	115,025	11,502	910,895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1,117,792	80,369	115,025	11,502	910,895	1,301,935	751,673
		아내	400,000	8,960	0	0	391,040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1,117,792	80,369	115,025	11,502	910,895	1,301,935	751,673
		아내	400,000	8,960	0	0	391,040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1,117,792	80,369	115,025	11,502	910,895	1,821,790	910,895
		아내	1,117,792	80,369	115,025	11,502	910,895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71.46%		
자녀 출생 1년 후						71.46%			
자녀 출생 2년 후						86.60%			
2009년	자녀 출생전	남편	1,218,817	92,769	95,011	9,501	1,021,536	2,043,071	1,179,568
		아내	1,218,817	92,769	95,011	9,501	1,021,536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1,218,817	92,769	95,011	9,501	1,021,536	1,507,356	870,272
		아내	500,000	14,180	0	0	485,820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1,218,817	92,769	95,011	9,501	1,021,536	1,507,356	870,272
		아내	500,000	14,180	0	0	485,820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1,218,817	92,769	95,011	9,501	1,021,536	2,043,071	1,021,536
		아내	1,218,817	92,769	95,011	9,501	1,021,536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73.77%		
자녀 출생 1년 후						73.77%			
자녀 출생 2년 후						86.60%			
2011년	자녀 출생 전	남편	1,318,965	106,239	107,845	10,784	1,094,097	2,188,194	1,263,354
		아내	1,318,965	106,239	107,845	10,784	1,094,097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1,318,965	106,239	107,845	10,784	1,094,097	1,732,545	1,000,286
		아내	659,482	21,034	0	0	638,448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1,318,965	106,239	107,845	10,784	1,094,097	1,732,545	1,000,286
		아내	659,482	21,034	0	0	638,448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1,318,965	106,239	107,845	10,784	1,094,097	2,188,194	1,094,097
		아내	1,318,965	106,239	107,845	10,784	1,094,097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79.17%		
자녀 출생 1년 후						79.17%			
자녀 출생 2년 후						86.80%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부록표 2-5〉 지표 10: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가구

연도	기간	구분	개인소득 (A)	사회 보험료 (B)	소득세 (C)	지방세 (D)	세금 제외 가처분소득 A-(B+C+D)	가구 가처분 소득 (E)	1인당 가처분 소득	
2006년	자녀 출생전	남편	2,235,583	160,738	305,049	30,505	1,739,291	3,478,581	2,008,360	
		아내	2,235,583	160,738	305,049	30,505	1,739,291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2,235,583	160,738	305,049	30,505	1,739,291	2,130,331	1,229,947	
		아내	400,000	8,960	0	0	391,040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2,235,583	160,738	305,049	30,505	1,739,291	2,130,331	1,229,947	
		아내	400,000	8,960	0	0	391,040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2,235,583	160,738	305,049	30,505	1,739,291	3,478,581	1,739,291	
		아내	2,235,583	160,738	305,049	30,505	1,739,291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61.24%							
자녀 출생 1년 후		61.24%								
자녀 출생 2년 후		86.60%								
2009년	자녀 출생전	남편	2,437,633	185,538	290,021	29,002	1,933,071	3,866,143	2,232,118	
		아내	2,437,633	185,538	290,021	29,002	1,933,071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2,437,633	185,538	290,021	29,002	1,933,071	2,417,412	1,395,693	
		아내	500,000	15,660	0	0	484,340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2,437,633	185,538	290,021	29,002	1,933,071	2,417,412	1,395,693	
		아내	500,000	15,660	0	0	484,340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2,437,633	185,538	290,021	29,002	1,933,071	3,866,143	1,933,071	
		아내	2,437,633	185,538	290,021	29,002	1,933,071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62.52%							
자녀 출생 1년 후		62.52%								
자녀 출생 2년 후		86.60%								
2011년	자녀 출생 전	남편	2,637,930	212,478	305,690	30,569	2,089,194	4,178,388	2,412,393	
		아내	2,637,930	212,478	305,690	30,569	2,089,194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2,637,930	212,478	305,690	30,569	2,089,194	3,056,121	1,764,453	
		아내	1,000,000	33,073	0	0	966,927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2,637,930	212,478	305,690	30,569	2,089,194	3,056,121	1,764,453	
		아내	1,000,000	33,073	0	0	966,927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2,637,930	212,478	305,690	30,569	2,089,194	4,178,388	2,089,194	
		아내	2,637,930	212,478	305,690	30,569	2,089,194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73.14%							
자녀 출생 1년 후		73.14%								
자녀 출생 2년 후		86.60%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156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부록표 2-6〉 지표 10: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순 동등화 소득: 평균 소득의 150%에 해당하는 가구

연도	기간	구분	개인소득 (A)	사회 보험료 (B)	소득세 (C)	지방세 (D)	세금 제외 가처분소득 A-(B+C+D)	가구 가처분 소득 (E)	1인당 가처분 소득	
2006년	자녀 출생전	남편	3,353,375	241,108	496,877	49,688	2,565,702	5,131,403	2,962,617	
		아내	3,353,375	241,108	496,877	49,688	2,565,702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3,353,375	241,108	496,877	49,688	2,565,702	2,956,742	1,707,076	
		아내	400,000	8,960	0	0	391,040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3,353,375	241,108	496,877	49,688	2,565,702	2,956,742	1,707,076	
		아내	400,000	8,960	0	0	391,040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3,353,375	241,108	496,877	49,688	2,565,702	5,131,403	2,565,702	
		아내	3,353,375	241,108	496,877	49,688	2,565,702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57.62%			
자녀 출생 1년 후						57.62%				
자녀 출생 2년 후						86.60%				
2009년	자녀 출생전	남편	3,656,450	278,307	485,032	48,503	2,844,607	5,689,214	3,284,669	
		아내	3,656,450	278,307	485,032	48,503	2,844,607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3,656,450	278,307	485,032	48,503	2,844,607	3,327,468	1,921,114	
		아내	500,000	17,139	0	0	482,861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3,656,450	278,307	485,032	48,503	2,844,607	3,327,468	1,921,114	
		아내	500,000	17,139	0	0	482,861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3,656,450	278,307	485,032	48,503	2,844,607	5,689,214	2,844,607	
		아내	3,656,450	278,307	485,032	48,503	2,844,607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58.48%			
자녀 출생 1년 후						58.48%				
자녀 출생 2년 후						86.60%				
2011년	자녀 출생 전	남편	3,956,895	318,716	514,655	51,465	3,072,058	6,144,117	3,547,307	
		아내	3,956,895	318,716	514,655	51,465	3,072,058			
	자녀 출생 6개월 후	남편	3,956,895	318,716	514,655	51,465	3,072,058	4,036,549	2,330,503	
		아내	1,000,000	35,509	0	0	964,491			
	자녀 출생 1년 후	남편	3,956,895	318,716	514,655	51,465	3,072,058	4,036,549	2,330,503	
		아내	1,000,000	35,509	0	0	964,491			
	자녀 출생 2년 후	남편	3,956,895	318,716	514,655	51,465	3,072,058	6,144,117	3,072,058	
		아내	3,956,895	318,716	514,655	51,465	3,072,058			
	출산 전 소득 대비 출산 후 각 시점에서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비중									
	자녀 출생 6개월 후						65.69%			
자녀 출생 1년 후						65.69%				
자녀 출생 2년 후						86.60%				

주: 소득수준은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2008년 기준), 5차년도(2009년 기준), 7차년도(2011년 기준) 원자료를 분석하여 산출하였음.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판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회비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019-219956-01-014 (예금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01	근거중심보건의정책에 필요한 연구근거 현황 및 활용	김남순
연구 2013-02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3-03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구조 및 경영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대중
연구 2013-04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위상과 권리	윤강재
연구 2013-05	식품분야 규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식품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2013-06	화장품 및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연구	김정선
연구 2013-07	보건의료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2013-08	진료비지출 요인분석 및 거시적 관리방안	신현용
연구 2013-09	의약품 정책이 의사의 처방에 미친 영향 연구	박실비아
연구 2013-1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2013-11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설계	강희정
연구 2013-12	국민연금기금운용 중장기 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2013-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 방안	강신욱
연구 2013-14	소득계층별 순조세부담의 분포에 관한 연구	남상호
연구 2013-15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2013-16	기회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연구: 성장배경을 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2013-17	2013년 빈곤통계연보	임완섭/노대명
연구 2013-1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한중일의 최근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2013-19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이현주
연구 2013-20	한국복지매일 연계 질적 연구(3차):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3-21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의 지역단위 분석 연구	박세경
연구 2013-22	사회복지영역의 평가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2013-2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2013-24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질과 공급특성 분석 연구	박수지
연구 2013-25	복지재정 DB구축과 지표 분석	박인화
연구 2013-26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재정 형평화 연구: 재정분담체계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2013-27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신화연
연구 2013-28	사회보장 재원조달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유근춘
연구 2013-29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정영철
연구 2013-30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정은희
연구 2013-31-01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2013-31-02	인구예측모형 국제비교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03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신윤정
연구 2013-31-04	보육서비스 공급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은정
연구 2013-31-05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2013-31-06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여유진
연구 2013-31-07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 연구	도세록

발간번호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3-31-08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함의	김유경
연구 2013-31-09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신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소영
연구 2013-31-10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일차의료기관 모형개발	황나미
연구 2013-31-1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분석을 위한 지역 추적조사: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오영희
연구 2013-31-12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외부위탁
연구 2013-31-13	남북한 통합 시 적정인구 연구	이삼식
연구 2013-31-14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정경희
연구 2013-31-15	고령화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전망과 공급체계 개편연구	이윤경
연구 2013-31-16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의 공적연금제도 개편 방안	윤석명
연구 2013-31-17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선우덕
연구 2013-31-18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방안연구: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진수
연구 2013-31-19	효과적 만성질환 관리방안 연구	정영호
연구 2013-31-20	인구고령화가 소비구조 및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1	여성노인의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외부위탁
연구 2013-31-22	농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농촌 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외부위탁
연구 2013-31-23	평생교육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윤경
연구 2013-32-1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 및 지식포털운영	서미경
연구 2013-32-2	건강영향평가(TWCG)성과평가 및 건강행태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전략평가	최은진
연구 2013-33	아시아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건강보장	홍석표
연구 2013-34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 연구(4년차)	정은희
연구 2013-35	2013년 친서민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III: 사회서비스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 모델	이철선
연구 2013-36	2013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미애
연구 2013-3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빅 데이터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송태민
연구 2013-38	2013년 사회정신건강 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갈등 및 병리현상의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연구	이상영
연구 2013-39	2013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센터 운영	김승권
연구 2013-40-1	2013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이현주
연구 2013-40-2	2013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신규 표본가구 통합DB(KOWEPS Combined)을 중심으로	최현수
연구 2013-41	201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I): 만성질환관리, 일반의약품이용, 입산출산 부가조사	최정수
협동 2013-1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3년차)	오영호
협동 2013-2	가임기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이상림